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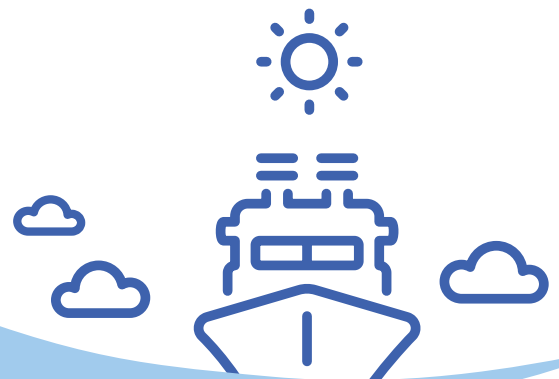
(어선안전조업법,중대재해처벌법)



본 매뉴얼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해설)

(어선안전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komsa

본 매뉴얼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어선안전조업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	서론	1
	2	경영방침 및 조직체계	7
	3	예산 및 자원관리	19
	4	교육 및 의사소통	25
	5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	33
	6	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63
	7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	73
	8	성과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87
	9	문서 및 기록관리	99
	10	어업별 위험성 평가표(예시)	103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3
1.1. 목적	3
1.2. 적용 범위	3
1.3. 적용 시기	5
1.4. 용어의 정의	5
1.5. 안전 원칙	6
제2장. 경영방침 및 조직체계	9
2.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9
2.2. 조직도	10
2.3.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11
2.4. 인원배치 및 재해예방 안전조치	12
2.5. 어선안전보건위원회	13
제3장. 예산 및 자원관리	21
3.1.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21
3.2. 예산편성 집행 평가	22
제4장. 교육 및 의사소통	27
4.1. 어선원의 안전보건교육 이행 및 점검	27
4.2. 어선원의 의견청취 방식	28
4.3. 어선원의 의견청취	28
4.4. 어선원의 의견 적용 및 이행점검	28
제5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35
5.1. 위험성 평가 준비	35
5.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종사자 참여	36
5.3. 위험성 평가 대상	37
5.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및 이행	38

5.5.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39
5.6. 어선 주요 위험 요인	40
5.7. 어선원 주요 위험 요인 예방대책 (참고)	47
5.8.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51

제6장. 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65

6.1.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의 의무	65
6.2. 어선원의 의무	67
6.3. 작업환경	67
6.4.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	69
6.5. 보건조치 기본원칙	70
6.6. 어선원 건강검진	71
6.7. 의사의 진료	71

제7장.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 75

7.1. 재해예방 매뉴얼 마련	76
7.2. 재해발생시 중앙행정기관 보고	81
7.3.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82
7.4.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83
7.5. 재발방지 대책, 재해 대응절차 점검	83

제8장. 성과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89

8.1. 어선 관리감독자의 평가	89
8.2.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명령	90
8.3. 행정기관의 작업중지 명령	91
8.4. 시정조치	92
8.5. 개선, 시정 명령의 보고 및 대책 마련	92
8.6.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93
8.7. 경영책임자의 개선·시정 명령 대책 이행 점검	94

제9장. 문서 기록 및 보관 101

9.1. 문서보관의 기간	101
---------------------	-----

제10장. 어업별 위험성 평가표 예시 105



서론

제1장. 서론

1.1. 목적 중처법 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

1.1.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중처법 어안법

1.2.1.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어선(제외 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1)에 대해 어선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2. 이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육상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어선원 5명 이상인 어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선단으로 이루어진 어선의 경우 총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적용됨.)

1.2.3.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적용되는 **강제 법규 및 규칙이 이 매뉴얼과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강제 법규 및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1)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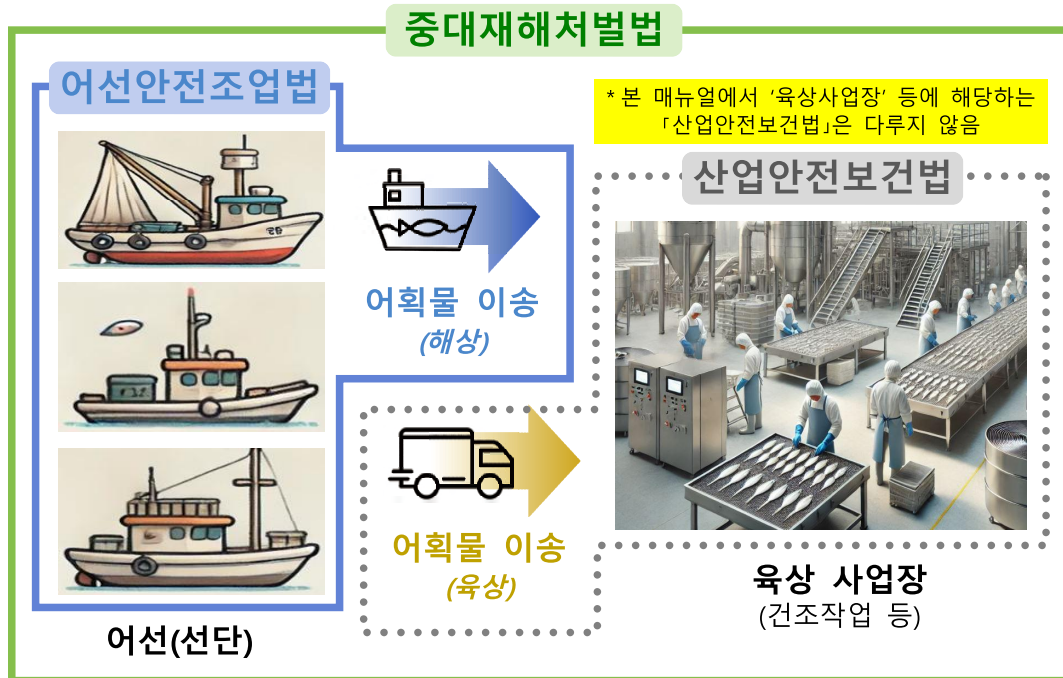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

사업장이 '어선'+ '육상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소유자가 어선과 사업장 모두 소유하는 경우)

< 사업장이 '어선'+ '육상사업장' >



(어선) 조업, 어획물 이송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을 적용하고 본 매뉴얼에서 다룸
(육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나, 본 매뉴얼에서는 다루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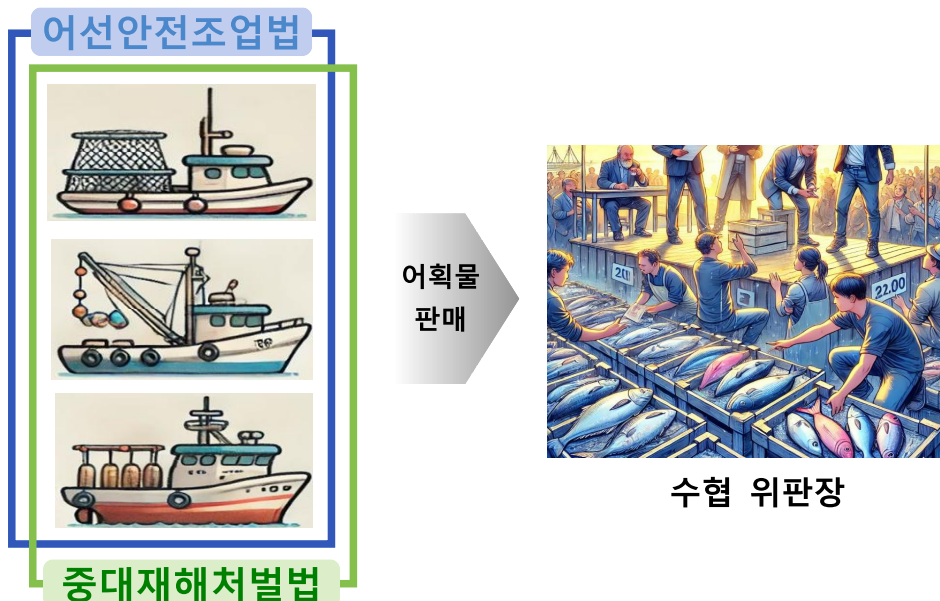
* 본 매뉴얼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 다룬다.

사업장이 '어선'에만 해당하는 경우(소유자가 어선만 소유하는 경우)

< 사업장이 '어선' >



(어선) 소유자가 어선만 소유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을 적용하고 본 매뉴얼에서 다룸



* 본 매뉴얼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 다룬다.

1.3. 적용 시기 중처법 어안법

1.3.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경영 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발생

1.3.2. 「어선안전조업법」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법률 시행

1.4. 용어의 정의 중처법 어안법

1.4.1.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어선원중대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어선원재해**”란 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재해**”란 중대재해,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6. “**어선원**”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7.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어선소유자를 포함한다.
8. “**어선관리감독자**”란 어선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을 보좌하고 어선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을 보좌하고 어선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12. “**위험성평가**”란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13. “**개인보호장비**”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
14.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15. “**어로설비**”란 어구를 인양·투척·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6. “**작업장비**”란 어로설비 외 선내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 1.4.2. 이 매뉴얼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매뉴얼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어선안전조업법에 해당 용어의 뜻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법,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고시), 연·근해어선 위험성평가 지침(고시) 및 기타 어선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안전 원칙 중처법 어안법

- 1.5.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고,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어선원 안전보건대응매뉴얼을 준수한다. 또한, 어선 내에서 일하는 모든 어선원이 안전할 권리를 누리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1.5.2. 어선원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 매뉴얼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와 어선원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1.5.3. 이 매뉴얼은 어선원 전원과 공유하고, 어선원은 주기적으로 매뉴얼을 습득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경영방침 및 조직체계

제2장. 경영방침 및 조직체계

2.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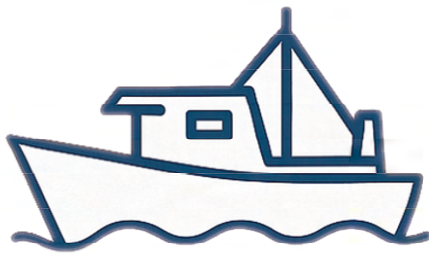
중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어선 경영방침



어선소유자는 안전보건
최우선으로 설정

어선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따를것



2.2. 조직도 어안법



- 2.2.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2.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법의 취지에 따라 중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2.3.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의 책임은 어선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2.4. 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어선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 2.2.5. 어선관리감독자는 각 어선별 선장이 그 직무를 담당하며, 어선소유자가 선장인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 또는 차석 어선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어선소유자의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



정기 점검



위험예방 교육



점검결과 보고

대 상	의 무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 정책 협조 및 이 매뉴얼에 따른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준수 ②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③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④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⑤ 작업(조업)방법 및 어선원별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의 배치

대 상	의 무
	⑥ 어선원에 대한 선내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⑦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어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 어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⑧ 어선원이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어선원에게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 ⑨ 설비, 기계, 기구, 용구(用具), 어구, 어창 등을 정비·정리하도록 지시 ⑩ 선내의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시
어선 관리감독자	①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 ② 어선원 직접 지휘·감독 ③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④ 어선원의 작업복·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⑤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⑥ 설비, 기계, 기구, 용구(用具), 어구, 어창 등 작업장 정비·정리 및 통로 확보에 대한 지시 및 확인·감독 ⑦ 작업(조업)방법 및 어선원별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의 배치 ⑧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⑨ 기타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가 위임한 사항
어선원	①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 준수

2.4. 인원배치 및 재해예방 안전조치

어안법

중처법

2.4.1. 작업(조업)방법 및 어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 상태
- 나. 어선원의 경력,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
- 다. 작업(조업) 공정별 위험 정도
- 라.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작업(조업) 시간

2.4.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
- 나. 어구, 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
- 다.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
- 라.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
- 마. 선내 작업환경의 정비
- 바.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 사. 통행과 승하선 안전
- 아. 밀폐구역에서 탈출장치
- 자. 선외추락의 방지
- 차.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5.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어안법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어선안전조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13조의2



구성

경영자 대표 1명
어선원 대표 1명 이상

기능

어선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구분	경영책임자(어선소유자)	어선원
의무	①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②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이행
심의·의결 사항	■ 관계법령, 어선원안전보건대응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사항으로 심의·의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아래 항목 심의·의결 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요건 및 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 운영 ①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②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 매 분기 (정기위원회), 위원장 소집시(임시위원회) ■ 위원회 운용기간 중 다시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항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간 운영	
구성 및 운영	인원	■ 위원장 포함 8명 이내로 구성 ■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위원의 인원수는 같은 수로 구성 ☞ 사용자측 ①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② 어선관리감독자 ③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 ☞ 노동자측 (사용자측에 선정된 위원은 제외하고 호선) ① 어선원대표 ② 어선원대표가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
	위원장	■ 위원 중에서 위원장 호선
	회의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 위원회 회의 후 아래항목에 대해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알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림

- [서식 2-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서식 2-2] 어선 관리감독자 임명
- [서식 2-3] 어선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예시)

해양호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어선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어선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 선원실 또는식당 게시

※ 어선원의 실질적 지배자의 서명

어선소유자/경영책임자

(서명)

어선관리감독자 임명장(예시)

소 속 : **해양호**

직 책 : **선장**

성 명 : **김선장**

위 사람을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어선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어선관리감독자 업무

1. 어선의 관련되는 기계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어선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어선원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어선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0

※ 어선원의 실질적 지배자의 서명

대 표 자 **김선주** (인)

어선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예시)							
일시	2025.1.3	어선명	해양호	회의장소	갑판위	회의구분	☐ 정기 ☐ 임시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참석 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참석 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어선 소유자	김선주	김선주		어선원 대표	김길동	김길동
	관리감독자	김선장	김선장		어선원 대표자가 지명한 어선원	김선원	김선원
	어선 소유자가 지명한 어선원	최선원	최선원		어선원 대표자가 지명한 어선원	이선원	이선원
	어선 소유자가 지명한 어선원				어선원 대표자가 지명한 어선원		
관련근거		어선안전조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심의 및 의결 사항	※ 구성사유 발생시 위원회 구성 1.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2.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 매3개월(분기)정기회의 (위원장이 소집) 및 임시회의 ※ 최대8인(사용자와 근로자 동일한 수로 구성) ※ 회의록은 어선원들에게 공유(선내,식당),게시						
협의 결과					사 진		



예산 및 자원관리

제3장. 예산 및 자원관리

3.1.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중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예산편성 · 집행 · 평가



1.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2.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3.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3.2. 예산편성 집행 평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및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서식 3-1] 안전보건 예산 수립
- [서식 3-2] 예산편성 및 집행 평가표

예산명	()년도 안전보건 예산

구 분	내 용
필요 예산	900 만원
사용처	500 만원 (선체, 양망기 등) 100 만원 (안전모 구매 등) 100 만원 (안전보건표지 구매)
기타 안전예산	100 만원 / 구명조끼 손상시 구매
영수증 등 이행기록	※ 예산 수립은 매 1년 ※ 평가는 매 반기

예산편성 및 집행 평가표(예시)

어선명	해양호	(2024)년도 (하)반기 예산편성 및 집행 평가표	결 재	관리감독 자	어선소유자
평가자	홍길동			홍길동	김철수(홍길동)
평가일 자	2025.2.21.				
양호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짐				
미흡	충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			평가		
			미흡	양호	
1.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2.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3. 어선의 특성에 맞게 안전수당 등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수당 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	
4. 어선원으로부터 청취한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여부				✓	
미흡 항목 사유					



교육 및 의사소통

제4장. 교육 및 의사소통

4.1. 어선원의 안전보건교육 이행 및 점검

증쳐법

어안법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근거	교육내용
법정 교육	안전 조업 교육	정기	어선의 소유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¹⁾	연 1회 4시간	-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 - 어선안전조업법시행 규칙 제14조[별표 4]	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한 조업 등 월선 · 피랍 대 비 안전사항 등
		특별		연 1회 2시간		
특별교육			어선원	1시간 이상	본 매뉴얼	중대재해예방

비고 1.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 외의 선원에게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해야 한다**

비고 2.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안 제 41조에 따라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어선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
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
3. 보호구, 구명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
5. 어선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
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

② 교육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4.1.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4.1.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점검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어선에서 실시해야하는 교육



1. 기본적 안전
및 위험예방



비상사태 및
구명설비 사용법



3. 보호구의
사용방법



4. 선내기계류의
작업방법

4.2. 어선원의 의견청취 방식

- 4.2.1.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 또는 간담회,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어선원 의견 제출서 작성 등 가능한 방법 활용

4.3. 어선원의 의견청취 중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4.3.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어선원이 적극 참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 실행 및 유지한다.
- 4.3.2. 어선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먼저 경영방침, 위험성평가 결과 등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한다.
- 4.3.3. 어선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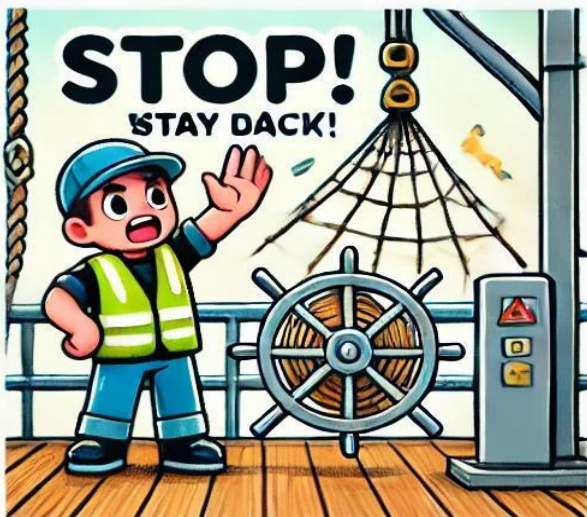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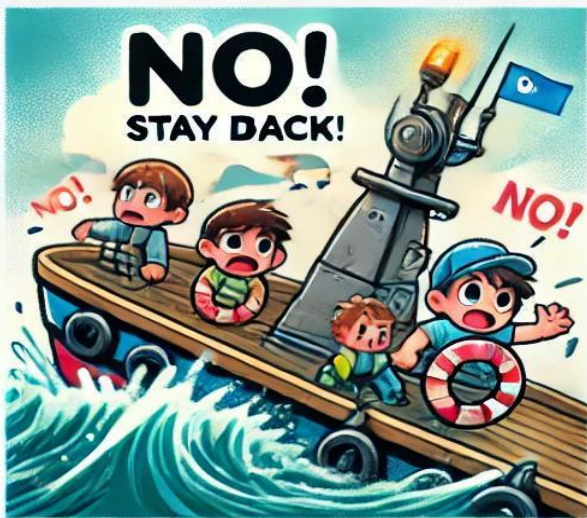
4.4. 어선원의 의견 적용 및 이행점검

- 4.4.1. 어선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을 이행한다.(연속적으로 작성)
- 4.4.2. 어선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주요 경고단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발음)	베트남어	베트남어 (발음)
안돼!	Tidak!	띠닥!	Không!	콩!
멈춰!	Berhenti!	브르헨띠!	Dừng lại!	중 라이!
조심!	Hati-hati!	하띠-하띠!	Cẩn thận!	컨 턴!
위험해, 뒤로 물러나!	Bahaya, mundur!	바하야, 문두르!	Nguy hiểm, lùi lại!	응위, 루이 라이!



- [서식 4-1]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일지
- [서식 4-2] 어선원 제안(의견) 제출서(예시)
- [서식 4-3] 안전보건 의견청취 평가표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
순번	일 시	방 법	내 용	교육실시자	서 명	비 고
특 기 사 항						

어선원 제안(의견) 제출서(예시)

Đề xuất thuyền viên tàu cá

Proposal awak kapal penangkap ikan

제
4
장

어선명 Tên tàu cá Nama kapal	해양호
성명 Họ và tên Nama	
요청내용 Nội dung yêu cầu Isi permintaan	구명조끼 교체 좌현 로라 교체 어선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 안전,보건 관련 요청에 불이익을 주면안되며 비용도 어선원들에게 전가하면 안됨.
개선효과 Hiệu quả cải thiện Efek perbaikan	어선원 안전확보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안전보건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작성자 (Người viết, Penulis) : (인)

[서식 4-3] 안전보건 의견청취 평가표(예시)

어선명	해양호	2025 년도 (상)반기 안전보건 의견 청취 평가표 (반기1회이상 작성)	결	경영책임자 어선소유자
평가자	김선장			
평가일자	2025.1.3		재	김소유

평가지표	평가결과		비 고
	예	아니요	
1. 어선원재해 발생 현황 공개 하였는지의 여부	✓		
2.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어선원이 제안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으며 대부분 어선원의 인지 여부	✓		
3. 위험성평가지 해당 작업과 관계된 어선원 참여 여부	✓		
4.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관계된 어선원의 참여 여부	✓		
5. 안전보건 제안 시 우수 제안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여부	✓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어선에서의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안전조치 수립



이행 여부 확인

5.1. 위험성 평가 준비

중처법

어안법

- 5.1.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기구·설비(이하 “선체등”),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종사자 참여

중처법

어안법

위험성 평가의 참여

어선소유자, 어선원의 참여



전구성원의 참여로
위험성 발굴



감소대책수립



감소대책수립



안전한 어선

5.3. 위험성 평가 대상

중처법

어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위험성평가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선내 작업(조업) 중 어선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가져올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법 제2조제1의4호의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여 관리 개선 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5.3.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5.3.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5.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및 이행 어안법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사전준비) ①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어선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정보를 미리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어선원재해 사례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 어선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5.5.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중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5.6. 어선 주요 위험 요인

5.6.1. 어선 정비 시 – 갑판 및 기관정비 작업 시 **갑판에 넘어짐, 전동 그라인더와 드릴에 베이거나(절단상), 망치 등에 맞을 위험**이 있음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의 결과
1. 엔진 점검 중 오일 유출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및 부상 발생
2. 공구 사용 중 손가락 끼임	골절 또는 절단 사고 발생
3. 전기 설비 점검 중 감전	화상, 신경 손상 또는 심장 마비 가능
4. 프로펠러 점검 중 갑작스러운 회전	손가락 또는 손 절단
5. 용접 작업 중 불꽃 튀김	화재 발생 및 심각한 화상 위험
6. 배터리 점검 중 폭발	선내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
7. 산소 부족한 공간에서 작업	질식으로 인해 의식 상실 또는 사망
8. 중량물 이동 중 허리 부상	디스크 탈출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9. 갑판 위 기름 및 윤활유 방치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10. 선체 외부 작업 중 파도에 휩쓸림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 위험
11. 크레인 사용 중 균형 불안정	크레인 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
12. 소화기 미점검 상태에서 화재 발생	초기 화재 진압 실패로 대형 화재 발생
13. 도장 작업 중 페인트 유증기 흡입	호흡기 손상 및 중독 증상
14. 냉각 시스템 점검 중 증기 노출	화상 및 호흡기 손상
15. 선내 조명 불량으로 시야 확보 어려움	공구 사용 중 손가락 절단 또는 부상
16. 선내 급수 시스템 점검 중 물 유출	감전 또는 낙상 위험 증가
17. 항해 장비 점검 중 추락	떨어져 골절 또는 사망
18. 고압 세척기 사용 중 미끄러짐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및 부상 발생
19. 탱크 청소 중 유증기 흡입	호흡기 질환 및 질식 가능성
20.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화재	연료 유출 후 폭발 위험
21. 통신 장비 점검 중 감전	선내 전력 차단으로 비상시 대응 불가
22. 엔진 내부 부품 탈거 중 무게 중심 붕괴	부품이 떨어져 발 또는 손 골절
23. 선내 협소한 공간에서 공구 사용	신체 일부가 끼어 부상 발생
24. 로프 및 장비 정리 미흡	발이 걸려 넘어짐
25. 엔진 과열로 주변 부품 화상	선원 화상 및 장비 손상
26. 조타 장치 점검 중 오작동	출항 후 어선 운항 불가
27. 유압 시스템 점검 중 갑작스러운 압력상승	고압 오일 분출로 화상 및 부상
28. 선내 배수구 막힘으로 갑판 침수	미끄러짐 및 감전 사고 발생
29. 선내 계단 정비 중 낙상	허리 부상 및 골절
30. 선체 외벽 청소 중 바다로 추락	익사 및 구조 지연



<삽화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5.6.2. 출항 준비 시 – 부두와 본선 사이 승·하선 및 갑판에 어구 및 주·부식 선적 시 **넘어짐과 물에 빠짐**, 닻자망과 고정자망에 사용하는 닻이나 멍 등에 **맞거나 끼일 위험**이망과 고정자망에 사용하는 닻이나 멍 등에 **맞거나 끼일 위험**이 있음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의 결과	
1. 연료 보충 중 과도한 유출		갑판 미끄러짐 및 화재 위험 증가	
2. 어구 및 로프 정리 중 손가락 끼임		골절 및 절단 사고 발생	
3. 어선 엔진 과열 점검 미비		출항 후 엔진 고장으로 표류 가능	
4. 조타기 오작동 점검 미흡		출항 후 어선 운항 불능	
5. 구명장비 점검 미흡		비상 상황 시 대응 불가능	
6. 기상 체크 미흡		악천후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	
7. 선내 전력 계통 점검 부족		항해 중 전력 공급 중단	
8. 어획물 저장고 온도 점검 미흡		냉장 불량으로 부패 가능	
9. 어선 균형 점검 미흡		출항 후 어선 기울어짐 발생	
10. 엔진 시동 중 연료계 고장		출항 불가능 및 표류 위험	
11. 선내 출입구 정리 부족		이동 중 낙상 사고 발생	
12. 크레인 조작 중 신호 미흡		장비 충돌로 인한 중상	
13. 선내 조명 부족		야간 작업 중 시야 확보 어려움	
14. 어선 무게 중심 불균형		출항 후 어선 전복 위험	
15. 선내 통신 장비 고장		긴급 구조 요청 불가능	
16. 로프가 정리되지 않아 출항 중 엉킴 발생		어선 추진력 저하 및 사고 위험	
17. 연료 보충 중 화재 발생		선내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	
18. 기관실 점검 중 고온 증기 노출		화상 및 호흡기 손상	
19. 도킹 장치 고장		부두 이탈 중 충돌 가능	
20. 부력 장치 및 구명설비 점검 미비		사고 발생 시 구조 어려움	
21. 선내 급수 시스템 점검 중 물 유출		갑판 미끄러짐 및 감전 사고	
22. 엔진 점검 미흡으로 시동 실패		출항 지연 및 운항 불능	
23. 로프 작업 중 장갑 미착용		로프 마찰로 인한 손바닥 화상	
24. 선내 배관 점검 중 가스 누출		질식 및 폭발 가능성	
25. 계류 장치 해체 중 손가락 끼임		골절 및 절단 가능성	
26. 엔진 점검 중 고압 오일 분출		화상 및 시력 손상	
27. 어창 냉각기 고장으로 인한 냉매 누출		누출된 냉매가스에 피부손상	
28. 출항 전 안전교육 미흡		선원 대응 능력 부족으로 사고 증가	
29. 연료탱크 누출 발생		해양 오염 및 환경 문제 발생	
30. 출항 전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항		조타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좌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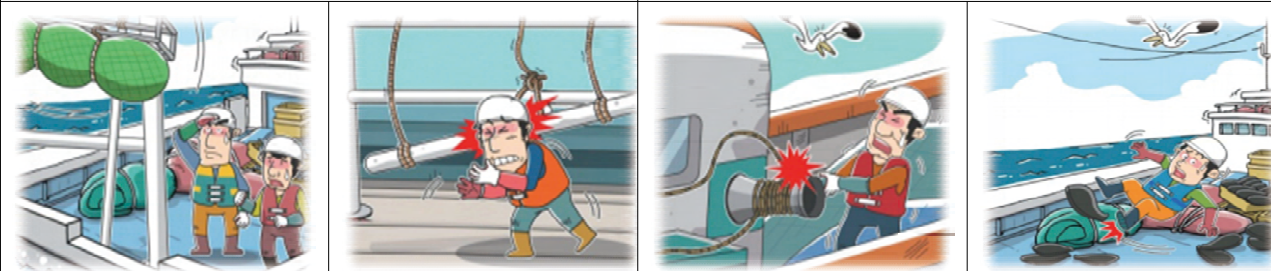
< 삽화 출처 : 국립수산물학원 >

5.6.3. 출항 및 어로준비 시 - 선내 이동 중 어구 등에 걸려 넘어짐, 어선간 충돌, 접촉, 침몰, 안전사고(물에 떨어짐)와 같은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음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의 결과	
1. 연료 보충 중 과도한 유출		갑판 미끄러짐 및 화재 위험 증가	
2. 어구 및 로프 정리 중 손가락 끼임		골절 및 절단 사고 발생	
3. 어선 엔진 과열 점검 미비		출항 후 엔진 고장으로 표류 가능	
4. 조타기 오작동 점검 미흡		출항 후 어선 운항 불능	
5. 구명장비 점검 미흡		비상 상황 시 대응 불가능	
6. 기상 체크 미흡		악천후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	
7. 선내 전력 계통 점검 부족		항해 중 전력 공급 중단	
8. 어획물 저장고 온도 점검 미흡		냉장 불량으로 부패 가능	
9. 어선 균형 점검 미흡		출항 후 어선 기울어짐 발생	
10. 엔진 시동 중 연료계 고장		출항 불가능 및 표류 위험	
11. 선내 출입구 정리 부족		이동 중 낙상 사고 발생	
12. 크레인 조작 중 신호 미흡		장비 충돌로 인한 중상	
13. 선내 조명 부족		야간 작업 중 시야 확보 어려움	
14. 어선 무게 중심 불균형		출항 후 어선 전복 위험	
15. 선내 통신 장비 고장		긴급 구조 요청 불가능	
16. 로프가 정리되지 않아 출항 중 엉킴 발생		어선 추진력 저하 및 사고 위험	
17. 연료 보충 중 화재 발생		선내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	
18. 기관실 점검 중 고온 증기 노출		화상 및 호흡기 손상	
19. 도킹 장치 고장		부두 이탈 중 충돌 가능	
20. 부력 장치 및 구명설비 점검 미비		사고 발생 시 구조 어려움	
21. 선내 급수 시스템 점검 중 물 유출		갑판 미끄러짐 및 감전 사고	
22. 엔진 점검 미흡으로 시동 실패		출항 지연 및 운항 불능	
23. 로프 작업 중 장갑 미착용		로프 마찰로 인한 손바닥 화상	
24. 선내 배관 점검 중 가스 누출		질식 및 폭발 가능성	
25. 계류 장치 해체 중 손가락 끼임		골절 및 절단 가능성	
26. 엔진 점검 중 고압 오일 분출		화상 및 시력 손상	
27. 어창 냉각기 고장		어획물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	
28. 출항 전 안전교육 미흡		선원 대응 능력 부족으로 사고 증가	
29. 연료탱크 누출 발생		해양 오염 및 환경 문제 발생	
30. 출항 전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항		조타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좌초	
   			

<삽화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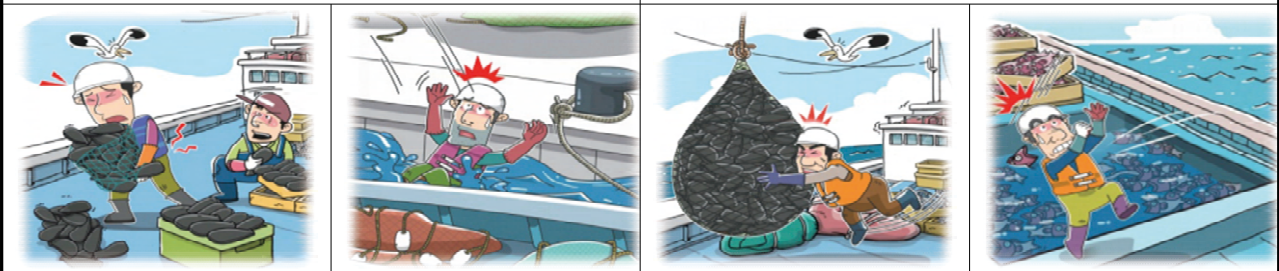
5.6.4. 조업(어로작업) 시 - 양망 중 부표줄이나 돛줄을 윈치나 캡스톤으로 감는 중에 **신체 일부가함께 감김(끼임), 뺨침대(뺨자망)나 로프류가 튕겨 맞음**, 해수와 어획물의점액등으로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지거나 선체 구조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음 등으로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지거나 선체 조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음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의 결과
1. 대형 어획물 운반 중 미끄러짐	선원이 넘어져 부상 발생
2. 해산물 처리 중 날카로운 지느러미에 베임	피부 절단 및 감염 위험
3. 냉동고 출입 중 문이 닫혀 갇힘	저체온증 및 질식 위험
4. 갑판 위 어획물 적재 불균형	어선 기울어짐으로 전복 가능성
5. 어획물 정리 중 무거운 화물 낙하	발 부상 및 골절 가능성
6. 어창 내 수산물 부패로 가스 발생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 가능
7. 어획물 적재 중 균형 유지 실패	어선 불안정으로 전복 위험 증가
8. 해양생물 배설물로 인한 갑판 미끄러움	낙상 및 골절 가능성
9. 얼음 처리 중 손이 얼음에 달라붙음	피부 손상 및 동상 발생 가능
10. 냉동고 장비 고장으로 저온 유지 불가	어획물 부패 및 선내 악취로인한 호흡기 질환
11. 해산물 가공 작업 중 날카로운 칼 사용	베임 사고 및 출혈 가능성
12. 건져 올린 어획물에서 독성 물질 발견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
13. 적재 중 기상 악화로 어선 흔들림	선원 균형을 잃고 부상 가능
14. 어획물 적재 중 크레인 조작 실수	낙하물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 가능
15. 수산물 적재 시 보호장구 미착용	감염, 부상, 피부 질환 가능성 증가
16. 냉동고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	생명 위협 및 응급상황 발생
17. 선내 해수 배출 시스템 이상	물이 갑판으로 넘쳐 미끄러짐 발생
18. 적재 과정 중 선원 발이 걸려 넘어짐	머리 충격 및 골절 위험
19. 어획물 적재 중 냉장고 문이 열려 있음	해양 오염 및 식품 위생 문제 발생
20. 얼음을 운반 중 장비 고장	수기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21. 적재 중 다른 어선과 충돌	장비 및 어획물 손상 가능성
22. 갑판 위 어획물 미정리	해산물이 굴러다니며 낙상 위험 증가
23. 수산물 적재 중 미끄러짐	허리 및 다리 부상 발생
24. 해양생물의 독성 분비물 노출	알레르기 반응 및 호흡 곤란 발생 가능
25. 크레인 적재 중 로프가 끊어짐	물체 낙하로 인한 심각한 부상 가능
26. 냉동고 작동 이상으로 내부 온도 상승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
27. 운반 중 수산물 포장 미흡	해양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
28. 배에서 미끄러짐	선원 부상 및 응급처치 필요
29. 갑판 위 어획물 처리 도중 기계 고장	생산성 저하 및 업무 지연 발생
30.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감염 및 식품 위생 문제 발생 가능
	

<삽화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5.6.5. 어획물 취급 및 적부 시 - 어획물의 지느러미에 **찢리는 등 유해·위험물 노출·접촉**, 해수와 어획물 점액으로 인한 미끄러운 **갑판에 넘어짐**, 적부 시 **어창에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음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의 결과
1. 무거운 어획물을 혼자 들다가 균형을 잃음	근골격계 부상 (허리, 어깨 손상)
2. 갑판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작업	미끄러져 넘어짐, 골절 또는 타박상
3. 어획물 적재 중 적재물이 갑자기 쏟아짐	협착 또는 깔림 사고
4. 크레인 또는 윈치 사용 중 로프가 끊어짐	로프에 맞아 부상, 장비 파손
5. 적재 구획 내 환기가 부족함	산소 부족으로 질식 위험
6. 어획물을 높은 곳에서 던져 적재함에 넣음	튀는 물건에 맞아 부상
7. 적재 중 무거운 어획물이 발에 떨어짐	발목 골절 또는 타박상
8. 어획물 적재 중 기상 악화로 어선이 흔들림	중심을 잃고 넘어짐
9. 작업 중 보호장비(장갑, 안전화) 미착용	손베임, 찢림, 골절 위험 증가
10. 혼잡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	충돌하여 넘어지거나 부상
11. 적재 구획이 과적되어 통로가 막힘	긴급 상황 시 대피 어려움
12. 어획물 운반 중 경사진 갑판을 지나감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 위험
13. 기계적 적재 장비(컨베이어 등) 점검 없이 사용	기계 오작동으로 협착 또는 끼임 사고
14. 어획물 정리 중 무거운 물체가 불안정하게 쌓임	무너져 깔림 사고 발생
15. 그물이나 로프에 발이 걸림	넘어지거나 바다로 추락
16. 동료와 협조 없이 무리한 하역	균형을 잃고 떨어짐
17. 해양생물(가시있는 어종, 해파리 등) 접촉	찢림, 독성 반응 발생
18. 어획물 내 빙 또는 얼음 처리 미흡	부패로 인한 식중독 위험
19. 어획물 하역 중 갑판에 물고기 내장 등이 쌓임	미끄러져 넘어짐
20. 선별 과정에서 날카로운 뼈나 지느러미에 찢림	손베임, 찢림 부상
21. 무거운 상자를 장비 없이 손으로 적재	장시간 작업 시 허리 부상
22. 높은 곳에서 어획물 투하 시 신호 없이 진행	동료가 맞아 부상
23. 크레인 또는 윈치 작업 시 신호 불명확	작업자 간 오해로 사고 발생
24. 어획물 하역 중 지나치게 서두름	실수로 장비 또는 몸 다침
25. 통발, 자망 등에서 어획물 꺼낼 때 무리한 힘 사용	손목 및 어깨 관절 부상
26. 선내 얼음 또는 냉동 구획에서 장시간 작업	저체온증 위험
27. 통로에서 어획물 떨어져 있음에도 즉시 정리 안 함	다른 작업자가 미끄러짐
28. 선내 적재된 어획물 균형 맞추지 않음	어선 무게 불균형으로 전복 위험
29. 해상 기상 악화 시 적재물 고정 미흡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려 배 기울어짐
30. 부주의하게 선내 화기 사용(흡연 등)	어획물 저장고 내 화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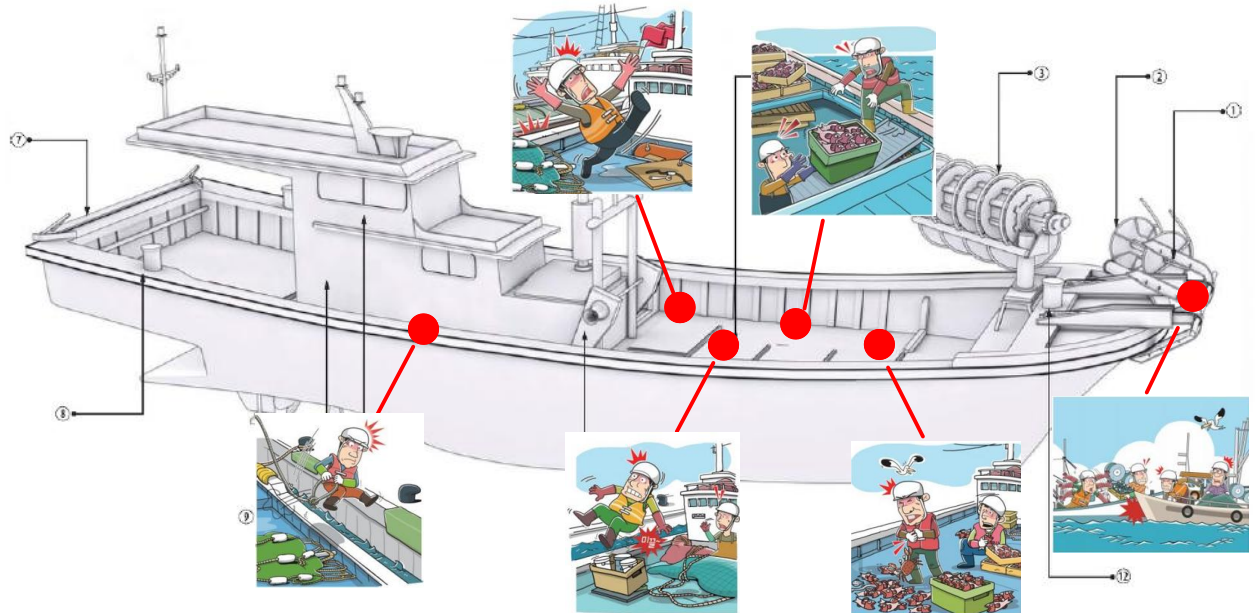


<삽화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5.6.6. 입항,하역준비 및 입항 시 - 입항 및 하역준비 시에는 **어선 충돌, 갑판에서 넘어짐, 선체 구조물에 부딪힘** 등의 위험임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의 결과	
1. 기상 악화 속 입항 시 시야 확보 부족		충돌, 좌초 사고 발생	
2. 부두 접근 시 속도 조절 미흡		부두 또는 다른 어선과 충돌	
3. 계류 작업 중 로프가 갑자기 당겨짐		로프에 맞아 부상 또는 끼임 사고	
4. 갑판 위 정리되지 않은 장비 방치		발이 걸려 넘어짐, 부상 위험	
5. 입항 중 갑판에서 부주의하게 이동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	
6. 계류용 로프 점검 없이 사용		끊어져 인명 및 장비 피해 발생	
7. 부두 접근 시 통신 혼선		선원 간 오해로 충돌 위험 증가	
8. 하역 장비(크레인, 윈치) 점검 미흡		기계 오작동으로 협착 사고	
9. 입항 후 어획물 하역 시 무리한 작업		근골격계 부상 (허리, 어깨 손상)	
10. 어선과 부두 간 갭이 큰 상태에서 이동		발 헛디딤 추락, 골절 위험	
11. 하역기 조작자와 작업자 간 신호 불명확		하역물 낙하로 인한 부상	
12. 야간 입항 시 조명 부족		시야 확보 어려워 충돌 또는 낙상	
13. 하역 중 갑판에 얼음 및 어획물 잔해 방치		미끄러져 넘어짐, 부상 위험	
14. 입항 시 기관실 점검 미흡		엔진 고장으로 어선 운항 장애	
15. 승하선 시 난간 및 손잡이 미사용		바다로 추락 또는 부상 위험	
16. 하역 중 적재물의 균형 맞추지 않음		한쪽으로 무게 쏠려 전도 위험	
17. 입항 중 무리한 방향 전환		어선 전복 위험 증가	
18. 하역 중 동료와 협조 없이 단독 작업		무거운 물건 들다 부상	
19. 부두 시설(사다리, 계단) 점검 없이 이용		부서진 시설물로 인한 추락	
20. 하역 중 보호장비(안전모, 장갑) 미착용		장비 또는 하역물 낙하 시 부상	
21. 입항 후 어선 내 연료 및 화기 점검 미흡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발생	
22. 장비 작동 중 갑판 위 불필요한 인원 배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상 위험	
23. 어선 전기설비 점검 미흡		감전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	
24. 계류 시 어선의 흔들림 고려 없이 이동		중심 잃고 넘어짐 또는 추락	
25. 하역 중 크레인 사용 시 하중 초과		크레인 붕괴 또는 적재물 낙하	
26. 부두와 어선 간 통로 불안정하게 설치		승하선 시 추락 위험	
27. 기상 악화에도 하역 강행		강풍 또는 파도로 인한 부상 발생	
28. 하역 작업 후 부주의하게 장비 정리		다른 작업자와 충돌 또는 부상	
29. 입항 후 피로한 상태에서 즉시 하역 작업		집중력 저하로 사고 발생 가능	
30. 입항 중 다른 어선과 교신 없이 이동		항로 충돌 및 사고 발생	
			

<삽화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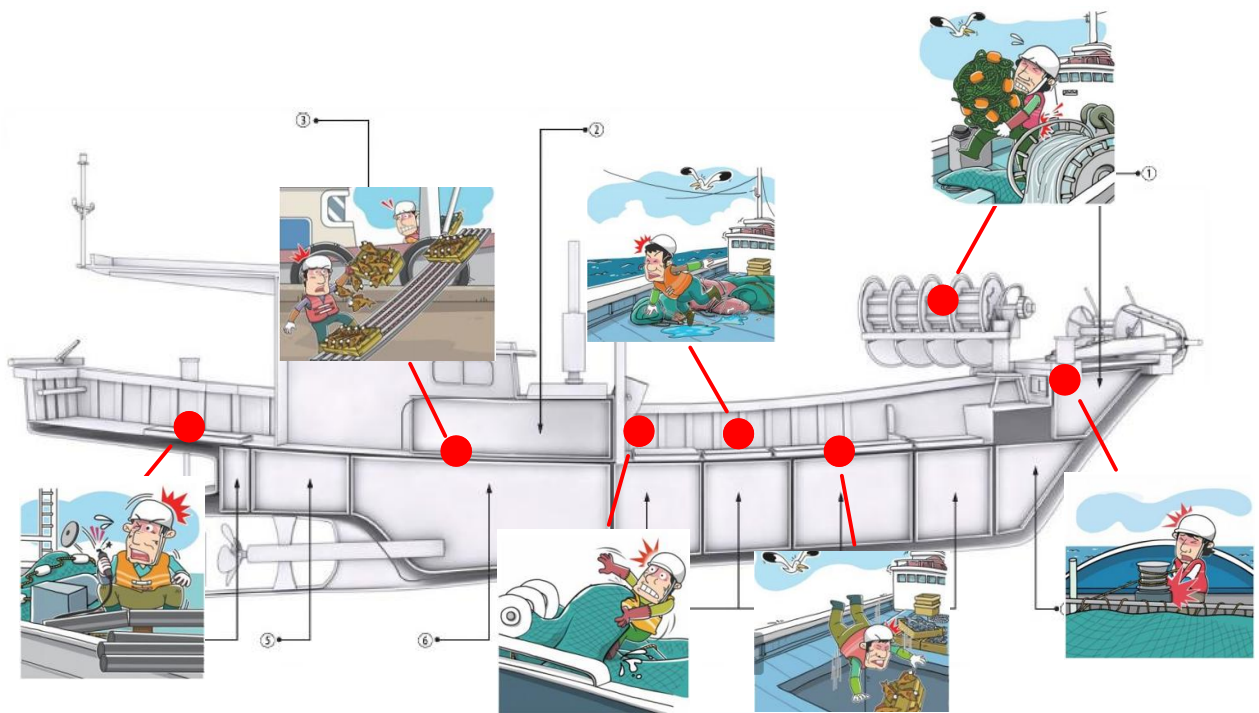


- ① 앵커 (Anchor)
 ② 안내 롤러 (Guide roller)
 ③ 양망기 (Net hauler)

- ④ 해저 (Hatch)
 ⑤ 마스트 (Mast)
 ⑥ 연돌 (Funnel)

- ⑦ 선미 롤러 (Stern roller)
 ⑧ 비트 (Bitt)
 ⑨ 갑판실 (Deck house)

- ⑩ 조타실 (Wheel house)
 ⑪ 사이드 드럼 (Side drum)
 ⑫ 비트 (Bitt)



- ① 선수창고 (Fore store)
 ② 거주구 (Crew's space)

- ③ 조타실 (Wheel house)
 ④ 창고 (After Store)

- ⑤ 창고/연료탱크 (Store/Fuel oil tank)
 ⑥ 기관실 (Engine room)

- ⑦ 여창 (Fish holder)
 ⑧ 선수창고 (Fore store)

< 어선 유해위험 요인 예상 지점 >

<삽화출처: 국립수산물연구원>

5.7. 어선원 주요 위험 요인 예방대책 (참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체	내용		「법」 관련 조항
	구분	예방대책	
선장	기상특보 발효 시	- 기상특보 발효시 또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 착용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관리 감독자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	- 기계·기구/설비 이상유무 확인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 작업복·보호장구·방호장치 점검·착용 교육 지도	
		- 어선원재해발생 보고,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감독	
	위험성평가 시	-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	
		- 위험성평가 시 개선조치 시행 참여	
소유자	선내 유해·위험 장소	- 선내 유해·위험 장소 그림·기호·글자 표지 설치/부착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필요한 안전조치	- 어구 줄감김·실족 해상추락 사고 위험	제31조(안전조치)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 어구·로프·구조물 신체충돌 사고 위험	
		- 양망기 신체끼임 위험	
		- 질식 잠수·작업 사고 위험	
	선내	- 선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어로작업	- 어로작업 시 기계·설비 방호장치 설치	
	통행·승하선	- 통행·승하선 안전 장치·설비 설치	
	밀폐공간	- 밀폐공간 비상시 대비용 기구·용품 비치	
	해상추락 예방	- 해상추락 방지 안전난간	
	건강장해 예방(보건) 조치	-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에 의한	[법] 제32조(보건조치) [시행규칙] 제19조(보건조치)
		-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에 의한	
		- 단순반복작업·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	
	선내	- 선내 위생적 작업환경 유지	
	작업장·통로·위험	- 작업장·통로·위험장소 채광·조명 유지	
	어로작업	- 어로작업 시 진동·소음 감소 장치 설치	
	(밀폐공간)	- 통풍·환기 장치 설치	
	선내	- 선내 위생적 식료품·식수 비치	

5.7.1. '어선원 안전보건 재해예방 기준' - 작업환경과 위생

주체	내용		'기준' 관련 조항
	구분	예방대책	
소유자 관리감독자	상시	- 설비 정비·정리 - 선내 작업환경 유지 노력	제9조(작업환경의 정비 등)
소유자	작업시	- 어로설비, 작업장비 작동부분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위험부분 식별 부착	제10조(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보호장치)
	보수·수리	- 의도하지 않은 작동 방지 예방조치	
	작업시	- 어로설비 회전부분 신체 접촉 방지 방호장치 설치	
소유자 관리감독자	작업시	- 고온 액·기체 통하는 관 감싸거나 덮어놓기	제11조(통행과 승하선 안전)
	선외 통행시	- 선외 사람 통행 위한 디딤널 설치 등 조치	
	어구·어획물 갑판 적재 시	- 어구·어획물 갑판 적재 시 배 현측에서 떨어진 장소로 통로 확보	
소유자	안에서 작업 시 (밀폐구역)	- 안에서 작업 시 문여는 장치, 신호장치 설치	제12조(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등)
소유자 관리감독자	타기 쉬운 폐기물 처리 시	- 타기 쉬운 기름 형걸, 톱밥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처리	제13조(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소유자 또는 관리감독자	조리작업 시	- 조리작업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충분한 환기, 누설확인 조치	제14조(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소유자	재해 자주 발생 장소, 위험물·소화기 보관장소	- 재해 빈번 발생 장소, 위험물·소화기 보관 관련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제15조(안전보건표지)
소유자	야간통행, 작업 시	- 야간통행·작업 시 필요한 조명 설치	제16조(선내조명)
소유자 관리감독자	작업장소, 통로	- 작업장소·통로 바닥에 넘어지거나 뽀족한 것 밟지 않도록 조치	제17조(바닥 위 등의 안전)
	어선원과 충돌위험 선내 돌출부	- 어선원과 충돌위험·선내 돌출부 천으로 감싸는 등 조치	
관리감독자	어획물, 부산물 있을 시	- 어획물, 부산물 있을 시 넘어지지 않도록 세척, 정리 정돈 조치	
소유자	(제11조)작업발판, 디딤널 설치 시	- 작업발판, 디딤널 설치 시 튼튼한 구조로 제작	제18조(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소유자 관리감독자	항해·조업 중	- 항해·조업 중 추락위험 장소에 보호울타리 사용	제19조(수중 추락의 방지)
	선내 작업 시	-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 제공	제20조(어선원의 휴식)
	선내 작업 시	- 선내 거주구역, 작업장소 청결히 유지, 적절한 휴식 제공	제21조(선내 위생의 유지 등)
	부상, 질병 발생 시	- 부상·질병 발생 시 어선원에게 의사 진료 제공	제22조(의사의 진료)
의사		- 부상·질병 발생 시 어선원 치료 시 기간·장해 정도 고려	
소유자 관리감독자	고온 다습한 장소 작업 시	- 기관실·조리실 등 통풍, 환기 조치	제23조(통풍 및 환기)
	쥐, 곤충이 숨기 쉬운 장소	-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쥐·곤충 제거	제24조(쥐 및 곤충류의 제거)

주체	내용		'기준' 관련 조항	
	구분	예방대책		
소유자 관리감독자	화장실, 샤워실	- 소독, 청결하게 관리, 상시 사용상태 유지	작업 환경 · 위생 (2)	제25조(화장실과 샤워실)
	상시	- 조리, 주방기구 청결		제26조(조리 및 주방 기구)
	상시	- 식료품 종류에 알맞은 보존방법 사용 - 저장설비 청결하게 유지 - 위생상 필요한 조치		제27조(식료품의 저장)
	상시	- 안전이 확인된 식수 사용 - 위생적으로 관리 - 식수 항시 음용 가능 설비		제28조(식수 관리)
	역병 발생 시	- 환자 격리, 환자 의복·기구 등 소독, 생수·날음식 섭취 제한 등		제29조(감염방지 및 조치)
	상시	-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 예방 주의사항 교육 등 - 선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과 연락 유지		제30조(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상시	- 어선원 신체적 피로 등 건강장해 예방 위한 적절한 조치		제31조(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상시	- 술·마약 사용상태에서 어로작업·당직근무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사용 시 - 과도한 음주 제한, 약물남용 금지·교육·홍보		

5.7.2. '어선원 안전보건 재해예방 기준' - 기계진동 및 소음

주체	내용			'기준' 관련 조항
	구분	예방대책		
소유자 관리감독자	기계 진동에 의한 영향	- 기계 진동에 의한 영향 최소화 위해 올바른 사용법 숙지 - 기계 진동에 의한 영향 충분한 휴식 수반 작업계획 - 기계 진동에 의한 영향 건강 위해 우려 시 작업 재배치	기계 진 동 · 소 음	제32조(진동감소 조치)
	진동작업	- 진동 작업 시 진동보호구 지급		
	보수	- 진동기계·기구 주기적 점검		
	진동작업	- 어선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 착용방법, 기계 관리방법, 진동장해 예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함		제33조(유해성 등의 주지)
소유자	청력손상 우려되는 소음 작업 장소	- 설비 대체, 흡음 등 소음감소위한 조치 해야 함. 다만, 곤란할 시 전문가 의견에 따름		제34조(소음감소 조치)
-	소음 노출 작업구역	- 해당구역 소음수준 표시		
소유자 관리감독자	소음작업	-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제35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어선원	소음 보호구 지급 시	- 착용, 관리해야 함		

5.7.3. '어선원 안전보건 재해예방 기준' - 개인보호장비 및 작업장비

주체	내용		'기준' 관련 조항
	구분	예방대책	
모든개인 보호장비	요건	- 위험 방지, 어선환경에 적합, 어선원 건강 고려, 조정하여 착용 가능	개인 보호 장비 · 작 업 장 비 제36조(개인보호장비의 요건)
	정기적	- 유지관리, 양호한 상태	
	사용 안할 시	- 선내 별도 장소 보관	
	여러보호장비 동시 착용	- 개별장비 보호효과 방해 않고 조합 가능	
	여러사람 함께 사용	- 건강, 위생 고려	
	사용조건 결정	- 위험의 심각성, 근로조건, 장비의 보호특성 고려	
	필요한 작업 수행 가능토록	-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량 선내 비치(안전모·벨트·장화, 장갑, 마스크 등)	
소유자	구매 시	- 신뢰성이 높은 제품	제37조(개인보호장비의 조달)

5.7.4. '어선원 안전보건 재해예방 기준' -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

주체	내용		'기준' 관련 조항
	구분	예방대책	
어선소유자 관리감독자	장비 선택	- 어로, 작업조건과 특성 고려하여 위험 최소화	제38조(어로 및 관련 작업 장비의 요건)
	위험 제거 불가능 시	- 위험성 최소화 위해 필요조치	
	사용 시	- 용도와 작업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작업 전	- 어로장비 부하 받을 시 위험 식별 검사 해야함	제39조(어로 및 관련 작업 장비의 검사·보수관리)
	어로작업조건 유지	- 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관리, 내용 기록	
	특별한 위험성 포함 장비 운용 시	- 숙련된 어선원이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 위험성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	- 안전·위생 기초, 위험작업 시 방법, 보호구 사용 방법, 안전·위생 수칙 내용, 설비·작업 구체적 사항, 신기술 도입시 훈련	제41조(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새로운 위험 예상 시	- 주기적 실시, 새로운 위험 예상 시 실시	
	어로 관련 작업장비 사용 시	- 어로 관련 작업장비 사용 시 위험성, 주의사항 정보 제공	제42조(교육 정보 제공)

5.8.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에서 수행되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업체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용역·위탁하는 도급업체에 적용한다.

1. 축계 발출 및 유지·보수 작업
2. 조선소 상가 및 선체 개·보수 작업
3. 엔진·기계·전기설비 정비 및 점검 작업
4. 어구·어망·갑판 장비 설치 및 수리 작업
5. 기타 어선의 운항 및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업

② 수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본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조치)

① 도급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기본 안전교육 실시

작업 시작 전에 간단한 안전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필수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를 착용하도록 한다.

2.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도급업체는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 예시:

- 1) 추락 위험 작업: 안전모, 안전벨트(필요 시)
- 2) 기계 작업: 안전장갑, 보호안경
- 3) 화재·폭발 위험 작업: 방염 장갑, 방진 마스크
- 4) 전기 작업: 절연 장갑, 절연 신발

3. 작업 전 안전 점검

- 도급자 및 작업자는 작업 전 위험 요소 3분 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1) 기계·설비의 이상 여부
- 2) 전기·배선의 안전 여부
- 3) 작업 공간의 정리·정돈 상태

4. 위험 작업 사전 협의 및 승인

- 용접, 전기설비 정비,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전 도급 용역 위탁하는 도급업체(어선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 위험작업 예시:

- 1) 밀폐 공간에서 작업 (배기 가스, 산소 결핍 위험)
- 2) 어선 내부 용접 및 절단 작업 (화재 위험)
- 3) 고소(高所) 작업 (추락 위험)

5. 응급조치 및 연락체계 구축

- 도급업체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작업 장소에는 기본 응급키트(소독약, 붕대, 지혈제)를 비치하고, 긴급 연락망(선주, 119, 해양경찰 등)을 공유한다.

제4조(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

- ① 도급자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업체를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 최근 1년 이내 중대재해 또는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여부
 - 3) 유사 작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여부
- ② 도급자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업체와 계약 시 안전 관련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최소한의 안전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한다.
 - 예시: "안전 준수 확인서"
 - 1)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보장합니다.
 - 2) 작업 전 위험 요소 점검을 수행합니다.
 - 3) 위험 작업 수행 전 발주자와 협의합니다.
 - 4)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③ 작업 중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향후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 ① 도급자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안전 척도 평가 (1: 미흡, 5: 우수)						
항 목	1	2	3	4	5	비고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	☐	
작업 전 안전 점검 수행	☐	☐	☐	☐	☐	
위험 작업 사전 협의 여부	☐	☐	☐	☐	☐	

- [서식 5-1] 위험성평가
- [서식 5-2] 위험성평가 실시 알림
- [서식 5-3] 위험성 평가표
- [서식 5-4]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서
- [서식 5-6] 도급,위탁,용역 안전조치 점검
- [서식 5-7] 도급,위탁,용역 작업 위험성 평가
- [서식 5-8] 도급,위탁,용역 위험성평가 회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선원실,식당 게시(알림)

※ 위험성 평가과정은 모든 어선원이 참여하여야함

※ 작업배치시 어선원의 안전, 건강상태, 경력, 나이,위험
정도, 해기능력, 휴식시간을 고려

평가 실시 요약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해설)참조)

최초	어선 인수시 1개월 이내
정기	매1년 재검토
수시	구조,기구,어구,재해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시

▶ 매년 검토하여 재작성

어선명: _____

※ 위험성 평가과정은 전 어선원이 참여

경영책임자 (어선소유자)

성명

김선주

어선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김선장

어선원

기관장	김철수	Nama	
갑판장	이갑판		
어선원			
Họ và tên			
Nama			

위험성평가 실시 알림

(해양호)는 소속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어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 일 시: 2025.1.3.
- 장 소: 목포 동명항
- 참석대상자: 전 어선원

○ 참고사항

-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어선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담당 작업의「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해양호

대표자: (서명)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Yếu tố nguy hiểm	Mức độ rủi ro (CAO, TRUNG BÌNH, THẤP)	Biện pháp cải thiện	Ngày dự kiến cải thiện	Ngày hoàn thành cải thiện	Người giám sát
	Faktor bahaya	Tingkat risiko (TINGGI, SEDANG, RENDAH)	Tindakan perbaikan	Tanggal rencana perbaikan	Tanggal selesai perbaikan	Pengawas
1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계류줄의 위치 확인 알림 및 주의			
2	선용품 정리 중 떨어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안전모 착용 및 선용품 위치 확인			
3	계류줄이 터지면 서 맞음	☒ 고 ☐ 중 ☐ 저	계류줄 장력발생시 근처에서 배회 금지			
4	청수수급 후 물탱크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짐	☐ 고 ☐ 중 ☒ 저				
5	선용품 선적 시 선체돌출 물이나 어구에 걸려 넘어 짐	☐ 고 ☐ 중 ☒ 저				
6	계류중인 어선사이 건너 다가 물에 빠짐	☒ 고 ☐ 중 ☐ 저	파도등 위험시 이동 금지			
7	선용품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8	어창구에서 어창 선적시 불균형, 헛디딤으로 떨어 짐	☐ 고 ☒ 중 ☐ 저	어창구 개방시 주의 표시			
9	어구를 정비하고 정리중에 줄이 터지거나 튀어 맞음	☐ 고 ☐ 중 ☒ 저				
10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또는 구조물에 걸려 넘어 짐	☐ 고 ☒ 중 ☐ 저	어구 또는 구조물 정리후 이동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예시)

회의(교육) 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교육)장소	어선 갑판위

☐ 회의내용

조업시 무리하지말 것 , 위험하다고 판단시 위험장소에서 피할 것
선장의 지시없이 행동하지 말것



- ※ 위험성평가 어선원 공유
- ※ 서명
- ※ 교육현장사진 보관
- ※ 식당 게시 등으로 어선원에게 알릴것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해양호 선장	김선장	김선장	해양호 선원	Họ và tên	이선원
해양호 선원	김선원	김선원	해양호 선원		
해양호 갑판장	김갑판	김갑판			
해양호 기관장	김기관	김기관			

도급,위탁,용역시의 안전조치 점검표(예시)

	순번	기술·능력·안전 평가 절차	확인				
수급업체 선정 (계약전)	1	안전수칙 준수 이행가능성 여부	√				
	2	최근 1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여부	√				
	3	유사작업 경험 및 실적여부	√				
안전조치 확인서 (작업전)	1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보장	√				
	2	작업 전 위험 요소 점검	√				
	3	위험 작업 수행 전 발주자와 협의	√				
	4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준비	√				
위험요소 3분점검 (작업전)	1	기계 설비의 이상여부	√				
	3	작업 공간의 정리정돈 상태	√				
	2	전기 배선의 안전 여부	√				
	4	위험 작업 사전 협의 및 승인	√				
안전 평가 (1:미흡, 5:만족)							
항 목		1	2	3	4	5	비고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	√	
작업 전 안전 점검 수행		☐	☐	☐	☐	√	
위험 작업 사전 협의 여부		☐	☐	☐	☐	√	

어선명	도급,위탁,용역 작업 위험성 평가표(예시)
해양호	

평가대상 작업: **엔진교체**

평가자: **김감독**

순 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자
1	승선시 미끄러짐	☐ ☒ ☐ 고 중 저	어망 등을 정리후 안전을 확보후 승 선할것	2025.5.2	'25.5.2	김선장
2	기관실 진입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충분한 스트레칭후 기관실 작업			
3	기관실에서 가스 중독	☒ ☐ ☐ 고 중 저	기관실 가스누설 확인후 작업			
4	체인블럭 사용중 떨어짐	☒ ☐ ☐ 고 중 저	엔진무게의 계산 및 체인블럭 하중 고려하여 작업			
5	엔진과 기관실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크레인 작업자와 기관실작업자 소 통방법 마련			
6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도급, 위탁, 용역작업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교육) 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교육)장소							
☐ 회의내용							
- 축발출 작업시 끼임에 유의할것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해양호	김	선주					
축계업체	이	공장					
축계업체 직원	박	직원					



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제6장. 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6.1.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의 의무

어안법

6.1.1. 선내 위생의 유지 등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거주구역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며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소음 및 진동 등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어선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는 등 어선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2. 통풍 및 환기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기관실, 조리실 등 고온 다습한 상태인 선내의 작업장에 통풍, 환기 등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3. 쥐 및 곤충류의 제거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그 밖에 쥐 또는 곤충이 숨기 쉬운 장소에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쥐 또는 곤충류를 제거해야 한다.

6.1.4. 화장실과 샤워실

1.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된 어선의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미생물 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고, 어선원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6.1.5. 조리 및 주방 기구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기 등 조리 및 주방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6.1.6. 식료품의 저장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료품의 저장을 위하여 식료품의 종류에 알맞은 보존 방법을 사용하고 저장설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조리에 사용할 식료품은 알맞게 그 선도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씻게 하는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7. 식수 관리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수를 선적(船積)하는 경우에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항상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8. 감염방지 및 조치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감염병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역병(疫病)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사용한 장소, 의복, 기구 등의 소독, 생수 및 날 음식 섭취 제한 등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9.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10. 진동감소 조치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가. 기계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숙지
 - 나.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
 - 다. 어선원이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작업의 재배치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진동작업에 종사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진동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3.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기계·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6.1.11. 유해성 등의 주지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선원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 나.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 방법
 - 다. 진동기계·기구 관리 방법
 - 라. 진동장해 예방 방법

6.1.12. 소음감소 조치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기계·기구·어로설비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어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소음 수준	문구
80-85 dB(A)	소음이 많으므로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십시오
85-110 dB(A)	소음이 위험한 수준이니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십시오
110-115 dB(A)	주의: 소음이 심하므로 청력보호구를 착용하고 오래 머무르지 마시오
>115 dB(A)	주의: 과도하게 높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10분 이상 머무르지 마시오

6.2. 어선원의 의무 어안법

6.2.1.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1. 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 따라 항해당직자인 어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음주와 약물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 및 조업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
5. 어선관리감독자 및 선장은 어선원이 선내에서 음주 및 약물남용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어선원을 징계하거나 어선소유자에게 해당 어선원의 하선을 요구할 수 있다.

6.2.2.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지켜야 한다.

6.3. 작업환경 어안법

6.3.1. 작업환경의 정비 등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설비, 기계, 기구, 용구(用具), 어구, 어창 등을 정비·정리하고 선내의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3.2.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 덮개, 그 밖의 보호장치의 내부, 기계의 위험한 부분 등을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 및 관리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를 보수 또는 수리 등의 목적으로 정지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3.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로설비, 작업장비 또는 동력전달장치의 회전축, 톱니바퀴(齒車), 플라이휠 및 그 밖의 회전·작동 부분에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증기, 열탕 및 그 밖에 고온의 기체 또는 액체가 통하는 관에서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부분을 감싸거나 덮어 놓아야 한다.

6.3.3. 통행과 승하선 안전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구, 어획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로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어구, 어획물 등의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6.3.4.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등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창, 동결실, 냉동고 등 어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 밀폐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6.3.5.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기름 묻은 헝겊, 톱밥 및 그 밖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6.3.6.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1. 경영책임자,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조리작업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 확인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3.7. 어선안전보건표지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위험물질 보관 장소와 소화기 등 응급처치장비 보관장소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장소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나.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다.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

2.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물체에 직접 도색할수있다.

어선안전보건 표지부착의무



☒ 어선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안전·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 안전 작업기준·의식 고취사항 등



6.3.8. 선내조명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선내 야간통행, 작업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6.3.9. 바닥 위 등의 안전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위에 넘어 지거나 뽀족한 것을 밟아서 찢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과 접촉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선내 돌출부는 천으로 감싸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어선관리감독자는 어획물 및 부산물로 인한 작업자의 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세척과 정리정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3.10.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작업발판 및 디딤널을 설치할 경우 사용 과정에서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등을 고려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6.3.11. 수중 추락의 방지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항해 및 조업중 바다에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 울타리(保護柵)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3.12. 어선원의 휴식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작업강도, 어선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4.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 어안법

6.4.1.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로 및 작업조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어로 및 작업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어로 및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어선원은 어로 및 작업장비를 그 용도와 작업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6.4.2.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검사·보수관리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각종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로 및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어로 및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로 및 작업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6.4.3.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특별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및 설비의 운용은 가급적 숙련된 어선원이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 배치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게 해야 한다.

6.4.4.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지켜야 한다.



6.5. 보건조치 기본원칙 어안법

6.5.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5.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6.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채광 및 조명 유지
7. 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8.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9. 어선 내 위생적인 식료품 및 식수의 비치
10. 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6.6. 어선원 건강검진 어안법

- 6.6.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어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 어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6.6.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이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어선원에게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6.7. 의사의 진료 어안법

- 6.7.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어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 6.7.2. 의사는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은 어선원이 승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어선원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및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서식 6-1] 어로 및 작업장비 보수관리 기록서

[서식 6-1] 어로 및 작업장비 보수관리 기록서(예시)

어선명	어로 및 작업장비 보수·관리 기록

일자	작업내용	어선소유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확인
2025.1.4	좌현 롤라 수리	김선주
2025.2.5	출항전 그물 정비	김선주



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재해 예방 매뉴얼 마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하여 각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할것



재난, 재해 등
대응 조치



중대 산업재해
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1. 재해예방 매뉴얼 마련

중처법

어안법

7.1.1. 재해 대응절차는 어선원의 인명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7.1.2. 어선원 작업중지 및 대피

1. 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 소유자 및 어선원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어선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3.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모든 어선원과 협업하여 위험요소 제거 또는 안전조치, 긴급 안전 점검 실시 등의 예찰활동을 시행하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한다.
2. 단,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고발생 현장을 변형 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될 수 있으니 관련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한다.
3. 어선원의 안전보건상 문제 또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는다.

7.1.4. 재해발생시 보고체계

1. 대피한 어선원 또는 주변 어선원은 지체없이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어선관리 감독자는 어선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비상연락망을 통한 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을 한다.
가.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발생의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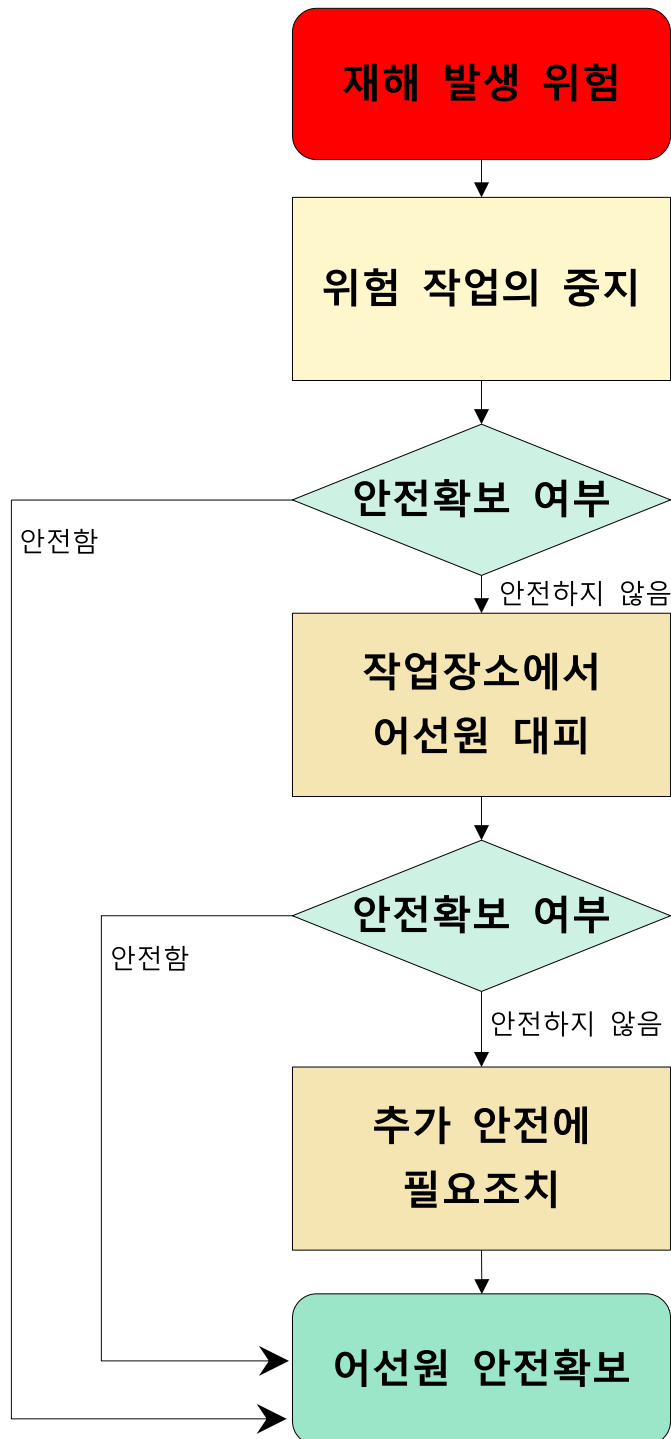
7.1.5. 상황전파

1. 경영책임자,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인명피해 최소화 및 상황전파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가. 선내 방송 등으로 상황 전파
나. 선내 방송 등으로 대피 통로 및 대피 장소 알림
다.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재해의 종류, 발생 장소, 외부대응팀(해경 등) 동원 사항 등을 전파한다.
라. 어선소유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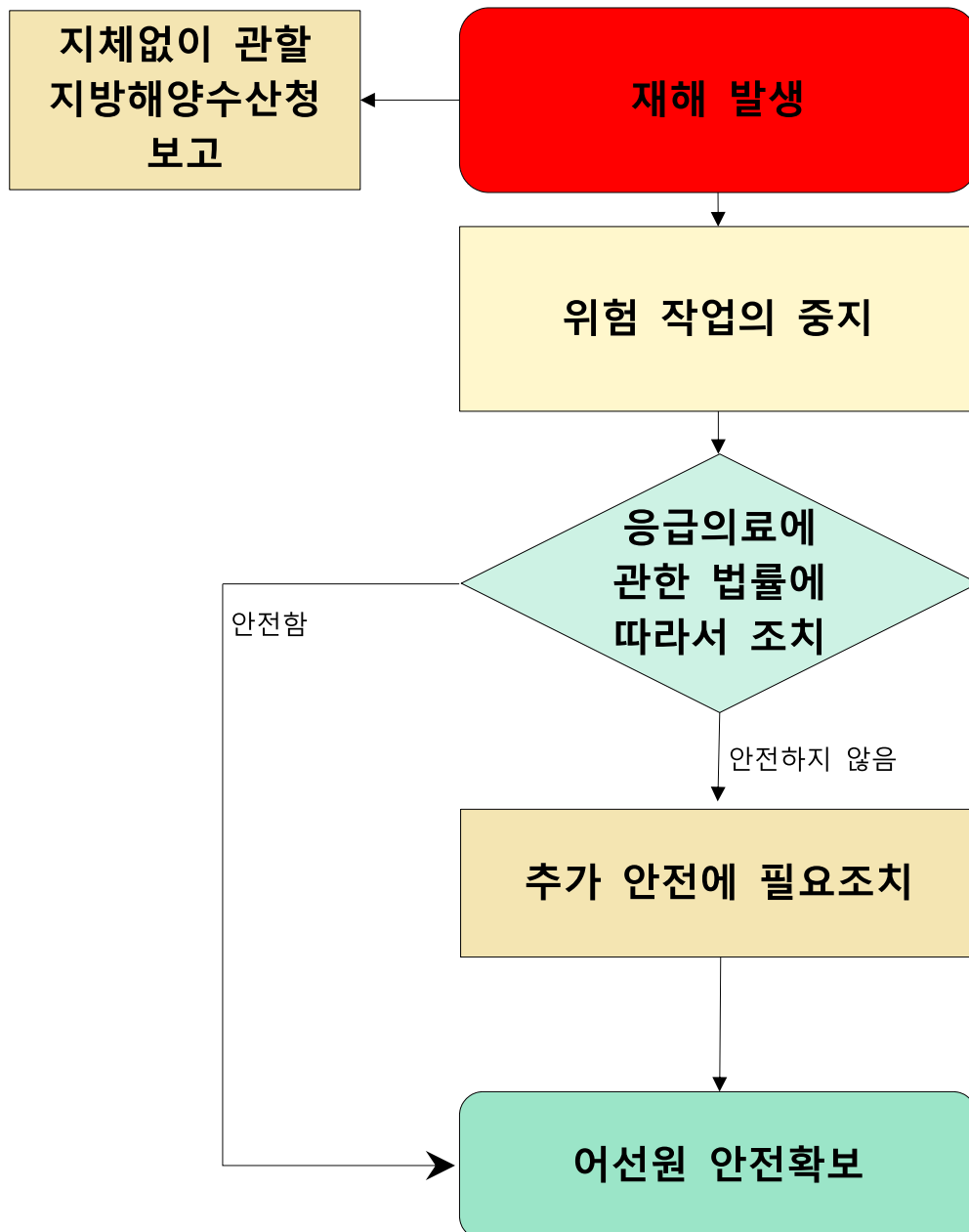
7.1.6. 재해자 구호조치

1. 구호조치는 부상을 입은 어선원의 근처에 존재하는 다른 어선원이 시행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안전감독관은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
3. 응급상황 시 행동 원칙에 따르며 해경,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리를 시행한다.

어선원 재해 발생위험시 어선관리감독자의 조치 매뉴얼



어선원 재해 발생시 어선관리감독자의 조치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어선안전조업법」이행사항



1

피해자 구조 및 2차 재해 방지

2

119신고

3

긴급조치 사항 이행

4

어선원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관할관청

5

사고 조치후, 어선원 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출혈 지혈



①	직접 압박	장갑 낀 손으로 거즈를 이용해 압박
②	붕대 감기	붕대로 감아 반창고로 고정 및 계속 압박
③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기

심폐 소생술



①	확인	어깨두드리기, 큰소리로 의식확인
②	압박	30회 가슴압박 (분당 100~120회, 5cm 깊이)
③	호흡, 반복	2회 인공호흡 후 반복

한랭손상



①	이동	따뜻한곳으로 이동
②	제거	조이는 악세사리 제거 (시계, 반지 등)
③	금지	손상부위 마사지 금지 (※ 뭉친 피가 심장혈관 막음)

절단상 처치



①	이물제거	생리식염수로 이물질제거
②	감싸기	딱 짤 거즈이용 (축축한 것 X)
③	비닐봉지 담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④	냉장보관	냉장고 또는 얼음팩 (얼음과 직접닿지 않도록 수건이용)

7.2. 재해발생시 중앙행정기관 보고

중처법

어안법

7.2.1.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한 사항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7.2.2.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7.2.3.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사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한다.

중앙행정기관 보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발생 개요
2. 피해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재해발생 시 조치

사고와 관련한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조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

현장 상황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고 원인분석



FCA-SCF

7.3.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중처법

어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과 협의하여 아래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관한다.

- ①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결과분석
- ②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원인 파악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③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 ④ 종합적 개선대책 수립

☞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① 재발방지 대책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측면으로 수립한다.
 - 가. 기술적 대책: 안전설계, 작업행정의 개선, 안전기준의 설정, 환경설비의 개선, 점검 보존의 확립
 - 나. 교육적 대책: 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
 - 다. 관리적 대책: 조직 정비, 매뉴얼 및 수칙 준수 독려
- ② 해당 사고 이외에도 유사한 작업 상황에서의 아차 사고도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 ③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다.
- ④ 인력 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상세 내역을 포함한다.
- ⑤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반영한다.

7.4.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중처법 어안법

7.4.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으며, 재해개요, 원인, 재발방지 대책 및 대책이행실태를 전 어선원에게 전파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한다.**

7.5. 재발방지 대책, 재해 대응절차 점검 중처법

- 7.5.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재발방지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거나 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7.5.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이 매뉴얼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어선원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립한 재해 대응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조치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7.5.3.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 ① 재발방지 대책 이행 보고
 - ② 위험성평가
 - ③ 사업장 순회점검
 - ④ 기타 그 밖의 안전보건활동
- 7.5.4.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재해 대응절차 및 이행현황을 반기 1회 이상 검토 후 필요시 시정 및 개선을 지시한다.
 - ① 어선원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 여부
 - ②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여부
 - ③ 어선원재해, 중대재해의 종류 및 전개에 따라 신속한 결정 및 조치 가능 여부

- [서식 7-1] 중대재해 대응절차 점검표
- [서식 7-2] 어선원 재해조사표(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1] 중대재해 대응절차 점검표(예시)

어선명	해양호	(2025)년도 (상)반기 중대재해 대응절차 점검표	결 재	경영책임자
점검자	김선장			어선소유자
점검일자	2025.1.1			홍길동
양호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가 이루어짐			
미흡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 않음			
중대재해 대응절차 매뉴얼 점검			평가	
			미흡	양호
표준	1.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본 매뉴얼에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수록함)			✓
	2.중대재해 대응절차에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해당 작업 중지, 어선원 대피, 관계 기관 보고 등의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3.중대재해 대응절차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4.중대재해 대응절차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중지(조업중지)를 하고 신속히 병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5.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추가				

어선원재해조사표(예시)

어선 정보	사업장명	해양호	어선소유자/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김 00		
				000-00-000000		
	어선명 (어선번호)	해양호 2412001-6441 230	선 종 (총톤수)	[v]연근해어선 []원양어선 []그 밖의 선종(G/T)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전화번호:)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 별	[]남 []여
	국 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체류자격:]			직 책	
	재해구분	[]사망/실종 []부상 []질병 []그 밖의 재해 ()				
	사고부위 (질병부위)		직무수행 불가일수	[]일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발생일시 (대한민국 표준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해역/항구/ 어선내/어 선외 등)	제주해역				
	재해발생원 인 및 상황	양망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재해자의 등을 타격함				
	재해발생 조치사항	해경신고 후 작업 중지 하고 응급조치시행, 제주한라대학병원 후송				
재발방지 계획	와이어로프 정비, 조업시 주의철저, 작업안전수칙 교육 시행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어선소유자

(서명 또는 인)

어선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성과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제8장. 성과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8.1. 어선 관리감독자의 평가 증처법

어선 관리감독자의 평가

> 경영책임자 확인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6개월마다 점검할 것



안전교육 점검 과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8.2.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명령 어안법

8.2.1.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아래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계 등의 사용 금지가.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발부 받은 경우 해당 명령서를 임의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아니되며,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어선소유자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선체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관계 어선원에게 알리며,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8.3. 행정기관의 작업중지 명령 어안법

8.3.1.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어선소유자는 작업중지명령서등을 발부 받은 경우 해당 명령서를 임의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아니되며, 관계 어선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작업중지명령서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어선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선체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어선원 안전·보건기준에서 어선의 선체·기계·어구·설비 등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26조(사용의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어선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어선소유자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어선 및 기계·어구·설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어선 및 기계·어구·설비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제28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어선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8.4. 시정조치 어안법

- 8.4.1.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관계 어선원에게 알리며,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8.5. 개선, 시정 명령의 보고 및 대책 마련 중처법 어안법

- 8.5.1.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 각 어선에 어선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해당 어선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선, 시정 명령 등의 원인
 2.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개선, 시정 명령을 받은 이력
- 8.5.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 개선·시정 명령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개선·시정 명령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8.6.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어안법

8.6.1. 해양수산부장관은 아래 각 호 어선에 대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을 명할 수 있다.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

8.6.2.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매뉴얼 2.3의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다.

8.6.3.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8.7. 경영책임자의 개선·시정 명령 대책 이행 점검

중처법

8.7.1.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 개선·시정 명령을 받고, 대책 이행을 지시했지만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시정 명령 대책 이행 점검을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해야 한다.

8.7.2.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는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서식 8-1] 어선관리감독자 평가표
- [서식 8-2] 어선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서식 8-1] 어선관리감독자 평가표(예시)

어선명	해양호	()년도 (상)반기 어선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반기1회이상 작성)	결	경영책임자 어선소유자 서명
평가자	김선주			
평가일자	2025.1.3.		재	김선주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직 책	성명	담당업무(업무수행 권한)	평가	
			미흡	양호
관 리 감 독 자		1. 어선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및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 방법과 안전 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
		2. 어선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및 어선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경영책임자 또는 어선소유자에 대한 안전 보건 지도·조언 협조		✓
		5. 위험성평가 참여 및 개선 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7. 선내 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절한 작업 인원의 배치		✓
		미흡항목의 조치		

어선원 안전보건 개선계획

어선명	해양호		어선소유자	
1. 본 계획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하고, 수립된 개선계획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계획서는 어선원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합니다. 3. 세부 개선계획 작성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시설, 어선원 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규칙22조) 4. 본 개선계획서 작성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여 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문제점	개선대책	이행 기간	
안전보건관리체제	1. 선주 및 선장의 안전보건관리 역할 불명확 2. 관리감독자 지정 미흡	1. 선주·선장 책임 명확화 및 관리감독자 지정	2025.1.1.~ 2025.1.3	
안전보건교육	1. 신규 어선원관리 및 외국인 선원의 안전관리 미흡	1. 출항전 안전관리 실시 2. 외국인 선원대상 모국어 교육자료 제공	2025.1.1.~ 2025.1.3	
어선원의재해예방	1. 승선중 안전장비 미착용	1. 안전장비 착용 점검 강화	2025.1.1.~ 2025.1.3	
작업환경의개선	1. 미끄러운 갑판에서 전도 위험	1. 미끄럼 방지 조치	2025.1.1.~ 2025.1.3	
확 인	명령 일자	제출일자	승 인	
		※ 행정기관 명령을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승인일자	어선원안전감독관
				(인)

개선방안(사진, 영수증등 첨부)

예시

9

문서 및 기록관리

제9장. 문서 기록 및 보관

9.1. 문서보관의 기간

9.1.1. 본 매뉴얼 (서식)에 적용된 문서는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서식 2-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서식 2-2] 어선 관리감독자 임명
- [서식 2-3]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서식 3-1] 안전보건 예산 수립
- [서식 3-2] 예산편성 및 집행 평가표
- [서식 4-2] 어선원 교육기록서
- [서식 4-2] 어선원 제안(의견) 제출서
- [서식 4-3] 안전보건 의견청취 평가표
- [서식 5-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서식 5-2] 위험성평가 실시알림
- [서식 5-3] 위험성 평가표
- [서식 5-4]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 [서식 5-5] 어선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서식 5-6] 도급,위탁,용역 안전조치 점검표
- [서식 5-7] 도급,위탁,용역 작업 위험성 평가표
- [서식 5-8] 도급,위탁,용역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 [서식 6-1] 어로 및 작업장비 보수관리 기록서
- [서식 7-1] 중대재해 대응절차 점검표
- [서식 7-2] 어선원 재해조사표(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 [서식 8-1] 어선관리감독자 평가표
- [서식 8-2] 어선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 위험성수준이 “고” 또는 “중” 이면 개선대책을작성

1. 어선정비시
2. 출항 및 조업준비시
3. 조업시
4. 어획물 취급시
5. 입항,하역준비,하역시 작업별 작성



10

어업별 위험성 평가(예시)

제10장. 어업별 위험성 평가표 예시

<목차>

0. 전체 어업	107
1. 동해구중형외끌이저인망	113
2. 서남해구중형 외끌이저인망	119
3. 쌍끌이대형저인망	125
4. 서남해구 중형쌍끌이저인망	131
5. 외끌이대형저인망	137
6. 동해구트롤	143
7. 대형트롤	149
8. 연안선망	155
9. 대형선망	161
10. 소형선망	167
11. 근해자망	173
12. 연안자망	180
13. 근해통발	189
14. 연안통발	195
15. 근해문어단지	201
16. 근해장어통발	207
17. 연안개량안강망	213
18. 근해안강망	220
19. 근해채낚기	226
20. 근해연승	232
21. 근해형망	238

22. 기선권현망	244
23. 근해봉수망	250
24. 잠수기	257
25. 연안들망	263
26. 연안조망	272
27. 연안복합	279
28. 구획어업	290
29. 정치망	296
30. 어획물 운반선	303

위험성 평가표

0. 전체 어업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 2인 이상 작업 원칙 - 안전수칙 준수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 안전장구 착용 - 작업전 그라인더 날 확인			
3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 논슬립 매트 설치 - 미끄럼 방지 작업화 착용			
4	승하선시 어선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 승하선시 바닥 주의			
5	어선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 고소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 기상여건 확인 후 작업			
6	벨트에 옷이 말려 들어가 끼임	☐ ☒ ☐ 고 중 저	- 적절한 작업복 착용 - 작업안전수칙 준수			
7	선내 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 용접전 불티방지조치 - 가연성 물질 제거			
8	프로펠러 축 발충중 축에 깔림	☐ ☒ ☐ 고 중 저	- 적절한 작업수칙 - 안전장구 철저			
9	항해등 교환시 바다 추락	☐ ☒ ☐ 고 중 저	- 기상여건 확인 - 적절한 안정장구			
10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망준비 중 어구 속구류에 맞음	☐ 고 ☒ 중 ☐ 저	투망준비시 숙련된 선원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2	앵커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고 ☐ 중 ☐ 저	- 앵커작업중 선장과 올바른 신호			
3	계류줄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 작업중 시야 확보			
4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 계류줄 작업시 줄의 상태 및 위치 확인			
5	어구수리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 작업중 시야 확보			
6	원치 작업중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 적절한 작업복 착용 - 개인보호구 철저			
7	선내계단 및 어창 계단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 기상상황 고려 - 장애물 제거, 어구 정리정돈			
8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9	식사 준비 중 뜨거운 식용유에 화상	☐ 고 ☐ 중 ☒ 저				
10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1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12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3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 와이어로프류에 끼임	☒ ☐ ☐ 고 중 저	- 작업 안전수칙 준수 - 그물, 와이어류 점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등에 끼 임	☐ ☒ ☐ 고 중 저	- 작업안전수칙 준수 - 숙련된 작업자 기본 2인1조 작업			
3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 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 ☐ 고 중 저	- 와이어로프 정비 철저 - 작업전 끊어질수 있는 줄 확인			
4	돌아가는 양망기 밑의 줄을 밟 고 떨어들어감	☐ ☒ ☐ 고 중 저	- 양망기 줄작업중 작업자 외 접근 금지			
5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 ☐ 고 중 저	- 어선의 복원성 고려하여 조업작업			
6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 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 ☐ 고 중 저	- 안전수칙 준수 및 작업전 어구 검사			
7	어구에 끼임	☐ ☒ ☐ 고 중 저	네트드럼,오타보드,네트 등 어구 사용시 주의			
8	현단에서 작업중 바다에 뺨짐	☒ ☐ ☐ 고 중 저	- 올바른 작업자세 - 기상여건 고려하여 작업			
9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 음	☐ ☐ ☒ 고 중 저				
10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 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 ☐ 고 중 저				
11	어구에 깔림	☐ ☐ ☒ 고 중 저				
12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 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 ☒ 고 중 저				
13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 ☒ 고 중 저				
14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 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 ☒ 고 중 저				
15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 ☒ 고 중 저				
16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적재중 컨베이어와 어상 자에 끼임	☐ ☒ ☐ 고 중 저	- 작업안전수칙준수 - 적절한 작업복 착용 - 비상시 정지기능 확인			
2	어상자가 무너지면서 맞음	☐ ☒ ☐ 고 중 저	- 작업안전수칙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3	어상자가 무너지면서 깔림	☐ ☒ ☐ 고 중 저	- 작업안전수칙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4	컨베이어 체인에 손이 끼임	☐ ☒ ☐ 고 중 저	- 작업수칙준수 및 교육			
5	현단에서 작업중 바다에 빠짐	☒ ☐ ☐ 고 중 저	- 올바른 작업자세 - 기상여건 고려하여 작업			
6	어획물 선별중 어획물을 밟고 넘 어짐	☐ ☒ ☐ 고 중 저	- 올바른 작업자세 - 기상여건 고려하여 작업			
7	어획물처리 및 정리 과정에서 부 주의로 인한 어획물에게 물림	☐ ☐ ☒ 고 중 저				
8	어상자 적재, 탈판등 반복작업으 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9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러운작업자세	☐ ☐ ☒ 고 중 저				
10	현단에 앉아 작업중 뒤로 넘어 가 바다에 빠짐					
11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윈드라스에 계류줄과 함께 손이 감김	☐ 고 ☒ 중 ☐ 저	- 적절한 작업복착용 - 작업 안전수칙 준수			
2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 선장은 조업후 일정한 휴식 유지			
3	입항차 앵커를감는 과정에 서 로프류 등에 맞음으로 부상	☐ 고 ☒ 중 ☐ 저	- 앵커의 무게 및 부하를 고려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 조업후 갑판 청소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 조업후 어창 닫아놓기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고 ☐ 중 ☒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고 ☐ 중 ☒ 저				
8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9	냉동어획물 하역중 동상	☐ 고 ☐ 중 ☒ 저				
10	어창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1. 동해구중형외끌이저인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체인블럭 및 와이어로프 절단으 로 중량물이 떨어져 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 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어선에서 넘어짐, 떨어 짐	☐ ☐ ☐ 고 중 저				
8	어선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2	계류줄이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3	계류줄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4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5	투망준비 중 어구 속구류에 맞음	☐ 고 ☐ 중 ☐ 저				
6	앵커분해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고 ☐ 중 ☐ 저				
7	어구수리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8	선내계단 및 어창 계단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10	식사 준비 중 뜨거운 식용유에 화상	☐ 고 ☐ 중 ☐ 저				
11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2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와 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등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출입구)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위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2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3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4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5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6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와이어로프 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 등 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문 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작업 중 와이어로프 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 작업중 못 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고 ☐ 중 ☐ 저				
3	입항차 씨앵커를 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고 ☐ 중 ☐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고 ☐ 중 ☐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 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고 ☐ 중 ☐ 저				
8						

위험성 평가표

2. 서남해구중형 외끌이저인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체인블럭 및 와이어로프 절단 등으로 중량물이 떨어져 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 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어선에서 넘어짐, 떨어 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해 화 상	☐ ☐ ☐ 고 중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2	계류줄이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3	계류줄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4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5	투망준비 중 어구 속구류에 맞음	☐ 고 ☐ 중 ☐ 저				
6	앵커분해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고 ☐ 중 ☐ 저				
7	어구수리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8	선내계단 및 어창 계단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10	식사 준비 중 뜨거운 식용유에 화상	☐ 고 ☐ 중 ☐ 저				
11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2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13						
14						
15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와 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등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출입구)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위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친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2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3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4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5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6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 줄류 와이어로프류에 끼임	☐ ☐ ☐ 고 중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 등 에 끼임	☐ ☐ ☐ 고 중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문 에 끼임	☐ ☐ ☐ 고 중 저				
4	투양망작업 중 와이어로프 에 굽힘	☐ ☐ ☐ 고 중 저				
5	갑판 작업중 못 에 찔림	☐ ☐ ☐ 고 중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 ☐ 고 중 저				
7	슬립혹 봉에맞음	☐ ☐ ☐ 고 중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 ☐ 고 중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 ☐ 고 중 저				
10	어구에 깔림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간 접촉 및충돌	☐ ☐ ☐ 고 중 저				
3	입항차 씨앵커를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 ☐ 고 중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 ☐ 고 중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8						

위험성 평가표

3. 쌍끌이대형저인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고 ☐ 중 ☐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고 ☐ 중 ☐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 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고 ☐ 중 ☐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고 ☐ 중 ☐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어짐	☐ 고 ☐ 중 ☐ 저				
7	승하선시 어선에서 넘어짐, 떨어 어짐	☐ 고 ☐ 중 ☐ 저				
8	어선 고소작업중 떨어짐	☐ 고 ☐ 중 ☐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해 화 상	☐ 고 ☐ 중 ☐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2	계류줄이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3	계류줄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4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5	투망준비 중 어구 속구류에 맞음	☐ 고 ☐ 중 ☐ 저				
6	앵커분해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고 ☐ 중 ☐ 저				
7	어구수리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8	선내계단 및 어창 계단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10	식사 준비 중 뜨거운 식용유에 화상	☐ 고 ☐ 중 ☐ 저				
11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2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와 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등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출입구)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위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친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2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3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4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5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6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 줄류 와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 등 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문 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작업 중 와이어로프 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 작업중 못 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간 접촉 및충돌	☐ ☐ ☐ 고 중 저				
3	입항차 씨앵커를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 ☐ 고 중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 ☐ 고 중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4. 서남해구

중형쌍끌이저인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어선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 유출에 의한 화재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2	계류줄이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3	계류줄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4	계류줄에 끼임	☐ 고 ☐ 중 ☐ 저				
5	투망준비 중 어구 속구류에 맞음	☐ 고 ☐ 중 ☐ 저				
6	앵커분해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고 ☐ 중 ☐ 저				
7	어구수리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8	선내계단 및 어창 계단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10	식사 준비 중 뜨거운 식용유에 화상	☐ 고 ☐ 중 ☐ 저				
11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2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13						
14						
15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와 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등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출입구)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위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친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2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3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4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5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6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 줄류 와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 등 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문 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작업 중 와이어로프 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 작업중 못 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간 접촉 및충돌	☐ ☐ ☐ 고 중 저				
3	입항차 씨앵커를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 ☐ 고 중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 ☐ 고 중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5. 외끌이대형저인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앵커줄에 끼임	☐ ☐ ☐ 고 중 저				
2	투망준비 중 어구 속구류에 맞음 앵커분해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 ☐ 고 중 저				
3	앵커분해 작업 중 앵커에 맞음	☐ ☐ ☐ 고 중 저				
4	어구수리 중 넘어 짐	☐ ☐ ☐ 고 중 저				
5	선내 계단 및 어 창 계단에서 넘어 짐	☐ ☐ ☐ 고 중 저				
6	갑판 어구 및 속 구류에 걸려 넘어 짐	☐ ☐ ☐ 고 중 저				
7	식사 준비 중 뜨 거운 식용유에 화 상	☐ ☐ ☐ 고 중 저				
8	앵커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9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 ☐ 고 중 저				
10						
11						
12						
13						
14						
15						
16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와 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 더/롤러 등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출입구)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긁힘	☐ 고 ☐ 중 ☐ 저				
5	갑판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친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2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3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4	선내 계단이동 중 넘어짐	☐ 고 ☐ 중 ☐ 저				
15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6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고 ☐ 중 ☐ 저				
17	장시간 조업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 목줄류 와 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 더/롤러 등에 끼임	☐ 고 ☐ 중 ☐ 저				
3	황천조업 중 선체 (출입구) 에 끼임	☐ 고 ☐ 중 ☐ 저				
4	투양망작업 중 와이어로프 에 굽힘	☐ 고 ☐ 중 ☐ 저				
5	갑판 작업중 못 에 찔림	☐ 고 ☐ 중 ☐ 저				
6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7	슬립혹 친 봉에맞음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 줄 등 와 이어로프/체인류 /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고 ☐ 중 ☐ 저				
3	입항차 씨앵커를 감는 과정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으로 부상	☐ 고 ☐ 중 ☐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질 등으로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고 ☐ 중 ☐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 안전 통로 미 확보로 인한 넘어짐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6. 동해구트롤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원치작업 중 신체가 끼임	☐ ☐ ☐ 고 중 저				
2	짐줄 등 와이어작업 중 와이어 에손이 긁힘	☐ ☐ ☐ 고 중 저				
3	어구준비중 와이어에 맞음	☐ ☐ ☐ 고 중 저				
4	갑판 및 선내 계단에서 넘어짐	☐ ☐ ☐ 고 중 저				
5	고소작업 중 떨어짐	☐ ☐ ☐ 고 중 저				
6	식사 준비 중 뜨거운 국물에 화 상	☐ ☐ ☐ 고 중 저				
7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 환	☐ ☐ ☐ 고 중 저				
8	그물작업 중 칼에베임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11		☐ ☐ ☐ 고 중 저				
12		☐ ☐ ☐ 고 중 저				
13		☐ ☐ ☐ 고 중 저				
14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에신체가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 중 오타보드와 선체 사이에팔이 끼임	☐ 고 ☐ 중 ☐ 저				
3	네트드럼에 팔 끼임	☐ 고 ☐ 중 ☐ 저				
4	톱롤러에 손 끼임	☐ 고 ☐ 중 ☐ 저				
5	황천조업 중 출입구 및 슬립웨이도어 등에 끼임	☐ 고 ☐ 중 ☐ 저				
6	투양망 작업 중와이어로프에 굽힘갑판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7	양망 중 어구속구류(그물목줄, 와이어, 샴줄, 뜸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8	양망중 그물목줄와이어로프류가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9	호이스트 와이어및 혹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와이어작업 중 스패너에 맞음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파리 등 미끄러운갑판에서 넘어질	☐ 고 ☐ 중 ☐ 저				
12	위험선내 계단 및 기관실에서 넘어짐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3	투망 중 어구에끼여 물에 떨어짐	☐ 고 ☐ 중 ☐ 저				
14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15	어구속구류 등 중량물취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6	투양망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7	투양망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체 동요로 어상자 또는 팬 낙하하여 깔리거나 맞음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어획물선별중 넘 어짐	☐ 고 ☐ 중 ☐ 저				
3	어획물처리 및 정리 과정에 서 부주의로 인한 어획물에 게 물림	☐ 고 ☐ 중 ☐ 저				
4	어상자 적재, 탈판등 반복작 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 연스런작업자세	☐ 고 ☐ 중 ☐ 저				
6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고 ☐ 중 ☐ 저				
3	입항차 씨앵커를 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고 ☐ 중 ☐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고 ☐ 중 ☐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 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7. 대형트롤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 나 날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 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 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 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 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 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 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해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원치작업 중 신체가 끼임	☐ ☐ ☐ 고 중 저				
2	침줄 등 와이어작업 중 와이어에 손이 걸림	☐ ☐ ☐ 고 중 저				
3	어구준비중 와이어에 맞음	☐ ☐ ☐ 고 중 저				
4	갑판 및 선내 계단에서 넘어짐	☐ ☐ ☐ 고 중 저				
5	고소작업 중 떨어짐	☐ ☐ ☐ 고 중 저				
6	식사 준비 중 뜨거운 국물에 화상	☐ ☐ ☐ 고 중 저				
7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8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11		☐ ☐ ☐ 고 중 저				
12		☐ ☐ ☐ 고 중 저				
13		☐ ☐ ☐ 고 중 저				
14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에신체가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 중 오타보드와 선체 사이에팔이 끼임	☐ 고 ☐ 중 ☐ 저				
3	네트드럼에 팔 끼임	☐ 고 ☐ 중 ☐ 저				
4	톱롤러에 손 끼임	☐ 고 ☐ 중 ☐ 저				
5	황천조업 중 출입구 및 슬립웨이도어 등에 끼임	☐ 고 ☐ 중 ☐ 저				
6	투양망 작업 중와이어로프에 급힘갑판 작업 중 못에 찔림	☐ 고 ☐ 중 ☐ 저				
7	양망 중 어구속구류(그물목줄 와이어, 샤클, 뚝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8	양망중 그물목줄와이어로프류가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9	호이스트 와이어및 혹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와이어작업 중 스패너에 맞음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파리 등 미끄러운갑판에서 넘어질	☐ 고 ☐ 중 ☐ 저				
12	위험선내 계단 및 기관실에서 넘어짐 황천조업중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13	투망 중 어구에끼여 물에 떨어짐	☐ 고 ☐ 중 ☐ 저				
14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15	어구속구류 등 중량물취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6	투양망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7	투양망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체 동요로 어상자 또는 팬 낙하하여 깔리거나 맞음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어획물선별중 넘어짐	☐ 고 ☐ 중 ☐ 저				
3	어획물처리 및 정리 과정에 서 부주의로 인한 어획물에 게 물림	☐ 고 ☐ 중 ☐ 저				
4	어상자 적재, 탈판등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 연스런작업자세	☐ 고 ☐ 중 ☐ 저				
6	어획 부산물로 인한 미끄러 짐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3	입항차 씨앵커를 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 ☐ 고 중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 ☐ 고 중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 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8. 연안선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 나 날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 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 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 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 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 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 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해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돛·계선줄 등에 손가락 끼임	☐ 고 ☐ 중 ☐ 저				
2	너울 또는 타선통항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넘어짐	☐ 고 ☐ 중 ☐ 저				
3	계류중인 어선사이 건너다 가 물에 빠짐	☐ 고 ☐ 중 ☐ 저				
4	장시간 어구 보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5	선회 및 선체 요동으로 추락	☐ 고 ☐ 중 ☐ 저				
6	선내 이동중 장애물 또는 선체 동요로 걸리거나 넘어짐	☐ 고 ☐ 중 ☐ 저				
7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2	투양망중 와이어 로프에 긁힘	☐ ☐ ☐ 고 중 저				
3	본선과 보조선간 접촉 충돌	☐ ☐ ☐ 고 중 저				
4	투양망 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 ☐ ☐ 고 중 저				
5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6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가시에 찔림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넘어짐	☐ ☐ ☐ 고 중 저				
3	활어통 위 떨어짐	☐ ☐ ☐ 고 중 저				
4	어획물을 삶기위한 가마솥 에 빠져 화상	☐ ☐ ☐ 고 중 저				
5	어획물 이적중 반복잡어르 오 인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6						
7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계류줄이 터지면서 맞음	☐ ☐ ☐ 고 중 저				
2	부두에 뛰어내리다가 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선간의 충돌	☐ ☐ ☐ 고 중 저				
4	물칸 및 갑판에 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 고 중 저				
7						

위험성 평가표

9. 대형선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 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원치작업 중 신체가 끼임	☐ ☐ ☐ 고 중 저				
2	침줄 등 와이어작업 중 와 이어에손이 긁힘	☐ ☐ ☐ 고 중 저				
3	어구준비중 와이어에 맞음	☐ ☐ ☐ 고 중 저				
4	갑판 및 선내 계단에서 넘 어침	☐ ☐ ☐ 고 중 저				
5	고소작업 중 떨어짐	☐ ☐ ☐ 고 중 저				
6	식사 준비 중 뜨거운 국물 에 화상	☐ ☐ ☐ 고 중 저				
7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 계질환	☐ ☐ ☐ 고 중 저				
8	그물작업 중 칼에베임	☐ ☐ ☐ 고 중 저				
9						
10						
11						
12						
13						
14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에신체가 끼임	☐ 고 ☐ 중 ☐ 저				
2	투양망 작업 중와이어로프에 긁힘	☐ 고 ☐ 중 ☐ 저				
3	양망 중 어구 및침줄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4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중 맞음	☐ 고 ☐ 중 ☐ 저				
5	양망중 어구속구(스위벨)가떨어 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6	투망 중 어구에끼여 물에 떨어짐	☐ 고 ☐ 중 ☐ 저				
7	어선간 이동중에 불에 떨어짐	☐ 고 ☐ 중 ☐ 저				
8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9	어구송구류 등 중량물취급 작업중로 인하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0	투양망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1	투양망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 고 ☐ 중 ☐ 저				
12	장시간조업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체동요로 어상자 또는 낙하하여 깔리거나 맞 음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 중 어획물 미끄러짐 부산물로 인한	☐ 고 ☐ 중 ☐ 저				
3	어획물 처리 및 정리 과정 에서 부주의로 인한 어획 물에 물림	☐ 고 ☐ 중 ☐ 저				
4	어상자 적재 탈판 등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5	어획물 처리 및 적부시 부 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 고 ☐ 중 ☐ 저				
6						
7						
8						
9						
10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3	입항차 씨앵커를 감는 과정 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 으로 부상	☐ ☐ ☐ 고 중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 질 등으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 ☐ 고 중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 안전 통 로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8						

위험성 평가표

10. 소형선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 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원치작업 중 신체가 끼임	☐ 고 ☐ 중 ☐ 저				
2	침줄 등 와이어작업 중 와이어에 손이 긁힘	☐ 고 ☐ 중 ☐ 저				
3	어구준비중 와이어에 맞음	☐ 고 ☐ 중 ☐ 저				
4	갑판 및 선내 계단에서 넘어짐	☐ 고 ☐ 중 ☐ 저				
5	고소작업 중 떨어짐	☐ 고 ☐ 중 ☐ 저				
6	식사 준비 중 뜨거운 국물에 화상	☐ 고 ☐ 중 ☐ 저				
7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8	그물작업 중 칼에 베임	☐ 고 ☐ 중 ☐ 저				
9						
10						
11						
12						
13						
4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에신체가 끼임	☐ ☐ ☐ 고 중 저				
2	투양망작업중 와이어로프에 얽힘	☐ ☐ ☐ 고 중 저				
3	양망 중 어구 및침줄 등에 맞 음	☐ ☐ ☐ 고 중 저				
4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중 맞음	☐ ☐ ☐ 고 중 저				
5	양망중 어구부속구(스위벨)가 떨어지면서 맞음	☐ ☐ ☐ 고 중 저				
6	투망 중 어구에끼여 물에 떨어 짐	☐ ☐ ☐ 고 중 저				
	어선간이동중에 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어선간 접촉 및충돌	☐ ☐ ☐ 고 중 저				
8	어구속구류 등 중량물취급 작 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9	투양망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 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10	투양망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 업자세	☐ ☐ ☐ 고 중 저				
11	장시간조업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체 동요로 어상자 또는 팬 낙하하여 깔리거나 맞음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어획물선별중 넘어 어짐	☐ 고 ☐ 중 ☐ 저				
3	어획물처리 및 정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어획물에 게 물림	☐ 고 ☐ 중 ☐ 저				
4	어상자 적재, 탈판등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 연스런작업자세	☐ 고 ☐ 중 ☐ 저				
6	어획 부산물로 인한 미끄러 짐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3	입항차 씨앙커를감는 과정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으로 부상	☐ ☐ ☐ 고 중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질 등으로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 ☐ 고 중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로 미 확보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11. 근해자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뎃 철판등 정비하고 거치 하는 과정에서 끼임	☐ ☐ ☐ 고 중 저				
2	실수로 망치로 손가락을쳐 맞음	☐ ☐ ☐ 고 중 저				
3	양망기 볼롤러 탈부착 작 업중 탈락되어맞음	☐ ☐ ☐ 고 중 저				
4	선수 갑판에서 미끄러져넘 어짐	☐ ☐ ☐ 고 중 저				
5	승하선시 뱃전에서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선내또는 선거고소작업 용사다리에올라작업중떨어 짐	☐ ☐ ☐ 고 중 저				
7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의해화상	☐ ☐ ☐ 고 중 저				
8	작업 전반 요구되는안전수 칙 미준수, 부주의와실수 피해	☐ ☐ ☐ 고 중 저				
9	도장용 사다리가 부러져떨 어짐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 끼임계선줄을 조정하다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2	롤러 등의 회전기계를 구동 중 끼임	☐ 고 ☐ 중 ☐ 저				
3	승하선중 선체와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 끼임	☐ 고 ☐ 중 ☐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낫에 베임	☐ 고 ☐ 중 ☐ 저				
5	어구를 정비하고정리중에 줄이 터지거나 튀어 맞음	☐ 고 ☐ 중 ☐ 저				
6	어구 속구, 얼음상자, 쇠파이프 등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 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고 ☐ 중 ☐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 조물에 걸려 넘어짐 보행, 손운반 중갑판의 요철을 보지 못하고 헛디터넘어짐	☐ 고 ☐ 중 ☐ 저				
8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9	사다리 작업중 떨어짐 보행중 어창구 헛디터 떨어짐	☐ 고 ☐ 중 ☐ 저				
10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1	전기 스위치 방전과 유증기에 의한폭 발식당 누출 가스폭발	☐ 고 ☐ 중 ☐ 저				
12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13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낫에 베임	☐ 고 ☐ 중 ☐ 저				
14	어구, 닻 등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과정에서 근골격제질환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5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짐 배 사이를 건너다녀울에 의해 넘어져 선체와 선체사 이에 끼임	☐ ☐ ☐ 고 중 저				
16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돌출물등에 부딪히 거나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7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관습적 행동	☐ ☐ ☐ 고 중 저				
18	출항 계선줄 작업 중 신체 끼임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 이에 끼임	☐ ☐ ☐ 고 중 저				
19	계선줄 회수, 양묘 중 줄(돛줄)이 튀어맞음	☐ ☐ ☐ 고 중 저				
20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갑판 어구; 요철물 에 걸려 넘어짐	☐ ☐ ☐ 고 중 저				
21	육상 계선주 작업후 승선시 뱃 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22	보행중 어창구 헛디딤 떨어짐	☐ ☐ ☐ 고 중 저				
23	식당 누출가스 폭발	☐ ☐ ☐ 고 중 저				
2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 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25	어선간 충돌	☐ ☐ ☐ 고 중 저				
26	입출항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 ☐ 고 중 저				
27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 어지거나 떨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양망기, 사이드 롤러 등의 폴리, 드럼에 로프 또는 그물을 걸어 감아 올리는 중에 회전체와 어구사이에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이물질 제거과정에서칼 사용 미숙으로손 베임	☐ 고 ☐ 중 ☐ 저				
3	어구 방호용 탈부착 중대(파이프) 파손, 탈락으로 맞음	☐ 고 ☐ 중 ☐ 저				
4	선내 이동 중 파도등의 충격으로 주변 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5	갑판에서 선체동요등으로 미끄러져넘어짐	☐ 고 ☐ 중 ☐ 저				
6	투망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어구에끼이거나 맞아 물에 빠짐	☐ 고 ☐ 중 ☐ 저				
7	어구의 닻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닻과 선체 사이 끼이거나 닻줄에 맞음	☐ 고 ☐ 중 ☐ 저				
8	장시간 진행되는양망과정의 반복으로 근골격계 질환발생	☐ 고 ☐ 중 ☐ 저				
9	양망 작업 도중 로프가 파단되거나튀어 올라 맞음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가시에찔림	☐ ☐ ☐ 고 중 저				
2	어획물 가구를 손운 반중걸리거나헛디떠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창적재차 어창구주변에서헛디 디거나 균형을잃어떨어짐	☐ ☐ ☐ 고 중 저				
4	멸치 자숙솥의 끓는물, 연돌 등 에 데어화상	☐ ☐ ☐ 고 중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 미준수	☐ ☐ ☐ 고 중 저				
6	고기담기, 가구운반등 반복적, 과중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7	좁은 어획물 처리공간에서 어획 물 사이로보행중헛디떠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입항 선수 계류작업중 닻이 타 선에 접촉하며 움직여 끼임	☐ ☐ ☐ 고 중 저				
9	계선줄 연결, 튜묘 중 줄(돛줄)이 튀어맞음	☐ ☐ ☐ 고 중 저				
10	안벽, 타선을당기거나 밀어 접 안할 때힘의 균형을 잃어넘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크레인으로 어구하역차량적 과정에서그물에걸려달려올라간후 떨어짐	☐ ☐ ☐ 고 중 저				
2	어구나어획물을육상으로달아올리는과정에서일부가떨어져맞음	☐ ☐ ☐ 고 중 저				
3	갑판, 어창에서미끄러져넘어짐	☐ ☐ ☐ 고 중 저				
4	크레인으로 어구를하역하는 과정에서그물에올라타하선하다떨어짐	☐ ☐ ☐ 고 중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 ☐ 고 중 저				
6	어구등중량물을크레인으로달아올송시맞음, 끼임	☐ ☐ ☐ 고 중 저				
7	조석간만의 차 가 큰부두에서승하선,하역작업에서 떨어져물에빠짐	☐ ☐ ☐ 고 중 저				
8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끼임, 맞음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12. 연안자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전기톱에 베임	☐ ☐ ☐ 고 중 저				
4	망치에 맞음	☐ ☐ ☐ 고 중 저				
5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놓쳐서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6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7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 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8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갑판 어구 및 속구 류에 걸려 넘어짐	☐ ☐ ☐ 고 중 저				
9	갑판 어구 및 속구 류에 걸려 넘어짐	☐ ☐ ☐ 고 중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1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 작업 중 떨어짐	☐ ☐ ☐ 고 중 저				
12	보행 중 어창구 헛디 터 떨어짐	☐ ☐ ☐ 고 중 저				
13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 예의 해화상	☐ ☐ ☐ 고 중 저				
14	선내 용접 중 화재 식당 누출 가스 폭발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 끼임계선줄을 조정하다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2	롤러 등의 회전기계를 구동 중 끼임	☐ 고 ☐ 중 ☐ 저				
3	승하선중 선체와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 끼임	☐ 고 ☐ 중 ☐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낫에 베임	☐ 고 ☐ 중 ☐ 저				
5	어구를 정비하고정리중에 줄이 터지거나 튀어 맞음	☐ 고 ☐ 중 ☐ 저				
6	어구 속구, 얼음상자, 쇠파이프 등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 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고 ☐ 중 ☐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보행, 손운반 중갑판의 요철을 보지 못하고 헛디터넘어짐	☐ 고 ☐ 중 ☐ 저				
8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9	사다리 작업중 떨어짐 보행중 어창구 헛디터 떨어짐	☐ 고 ☐ 중 ☐ 저				
10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1	전기 스위치 방전과 유증기에 의한폭발 식당 누출 가스폭발	☐ 고 ☐ 중 ☐ 저				
12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고 ☐ 중 ☐ 저				
13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낫에 베임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4	어구, 닻 등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5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짐 배 사이를 건너다녀울에 의해 넘어져 선체와 선체사이에 끼임	☐ 고 ☐ 중 ☐ 저				
16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돌출물등에 부딪히거나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7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관습적 행동	☐ 고 ☐ 중 ☐ 저				
18	출항 계선줄 작업 중 신체 끼임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이에 끼임	☐ 고 ☐ 중 ☐ 저				
19	계선줄 회수, 양묘 중 줄(닻줄)이 튀어맞음	☐ 고 ☐ 중 ☐ 저				
20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갑판 어구; 요철물에 걸려 넘어짐 어구, 계선줄을 당기거나 밀때 힘의균형을 잃어 넘어짐	☐ 고 ☐ 중 ☐ 저				
21	육상 계선주 작업후 승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22	보행중 어창구 헛디딤 떨어짐	☐ 고 ☐ 중 ☐ 저				
23	식당 누출가스 폭발	☐ 고 ☐ 중 ☐ 저				
2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하되는 그물이나 줄에 신체 끼임, 물에 빠짐 인양되는 어구와 선체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2	현측 밖으로 뺏어있는 어구, 어획물등을 손으로 당겨올릴 때 줄 등의어구와 선체 사이에 끼 임	☐ ☐ ☐ 고 중 저				
3	양승기, 양망기, 사이드 롤러 등의 풀리, 드럼에 줄 또는그물 을 걸어 감아올리는 중에 회전 체와 어구사이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4	인양되는 폐어구정리 중 보망 칼이나 낚에 베임	☐ ☐ ☐ 고 중 저				
5	양망(승) 중에 줄(와이어)이 터 져 맞음, 물에 빠짐 돛자망의 상하 와이어가 튀어 맞음 양승기 사바퀴, 선수 롤러에서 줄이탈락하며 튀어 맞음, 물에 빠짐 비정상적으로 엉킨어구나걸려 온 폐어구 정리시 줄이 튀어 맞음	☐ ☐ ☐ 고 중 저				
6	어구인양 중 어구에 맞음 어구인양 중 어구에 연결된 속 구에맞음	☐ ☐ ☐ 고 중 저				
7	어구 방호용 탈부착 종대(파이 프) 파손, 탈락으로 맞음	☐ ☐ ☐ 고 중 저				
8	돛, 통발, 얼음상자, 쇠파이프 등의 무거운 물건을들어 운반과 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고압 세척수에 맞 음	☐ ☐ ☐ 고 중 저				
9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돌출물등에 부딪힘 파도 등의 충격으로 주변 구조 물에부딪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0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11	계단의 상부에서 미끄러져 떨어 짐	☐ 고 ☐ 중 ☐ 저				
12	양투하 어구에 끼이거나 맞아 물에 빠짐	☐ 고 ☐ 중 ☐ 저				
13	식당 누출가스 폭발	☐ 고 ☐ 중 ☐ 저				
14	조타실 배전반 과열 화재 기관실(배전반, 유증기 자연발화 추정) 화재	☐ 고 ☐ 중 ☐ 저				
15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 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고 ☐ 중 ☐ 저				
16	어선간 충돌	☐ 고 ☐ 중 ☐ 저				
17	어로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고 ☐ 중 ☐ 저				
18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과정 에서 근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9	근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20	어구 인양하 중 보망칼이나 낚 이에 베임	☐ 고 ☐ 중 ☐ 저				
21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넘 어지거나 떨어짐	☐ 고 ☐ 중 ☐ 저				
22	선체의 요동으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화상	☐ 고 ☐ 중 ☐ 저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 가시, 가오리 침, 꽃게발 등에 찔림	☐ 고 ☐ 중 ☐ 저				
2	미끄러운 고기,진, 해파리 등을 밟아 미끄러져넘어짐	☐ 고 ☐ 중 ☐ 저				
3	어창적재차 어창구 주변에서 헛디디거나 균형을잃어 떨어짐	☐ 고 ☐ 중 ☐ 저				
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5	고기털기, 가구운반, 드럼작업등 반복적, 과중량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6	좁은 어획물 처리공간에서 어획물 사이로 보행중 헛디디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11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작업중 계선줄에 신체 끼임 승하선중 선체와선체 또는 안벽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2	계선줄 연결, 튜모 중 줄(땃줄)이튀어 맞음	☐ ☐ ☐ 고 중 저				
3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갑판 어구; 요철물에 걸려 넘어짐 안벽, 타선을 당기거나 밀어접안할 때 힘의 균형을 잃어 넘어짐	☐ ☐ ☐ 고 중 저				
4	승하선시 뱃전에서 뛰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구 주변에서헛디디거나 균형을 잃어 떨어짐	☐ ☐ ☐ 고 중 저				
6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부주의와 실수피해	☐ ☐ ☐ 고 중 저				
7	입항 중 어선간충돌	☐ ☐ ☐ 고 중 저				
8	입항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 ☐ 고 중 저				
9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부딪힘,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0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돌출물등에 부딪힘 보행중 헛디터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1	어획물 가구, 땃등을 손운반중다른 물체와의사이에 손이 끼임	☐ ☐ ☐ 고 중 저				
12	어구나 어획물을육상으로 달아올리는 과정에서일부가 떨어져 맞음	☐ ☐ ☐ 고 중 저				
13	갑판, 어창에서미끄러져 넘어짐 갑판 어구; 요철물에 걸려 넘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4	승하선시 뱃전에서 뛰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5	야적 어구의 상부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 ☐ ☐ 고 중 저				
16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 ☐ 고 중 저				
17	가구운반, 드럼작업, 어구 양륙 등 반복적, 과중량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18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돌출물등에 부딪힘 보행중 헛디딤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9						

위험성 평가표

13. 근해통발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 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땃·계선줄 등에손가락 끼임	☐ 고 ☐ 중 ☐ 저				
2	부두와 어선사이이동 시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3	너울 또는 타선통항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넘어짐	☐ 고 ☐ 중 ☐ 저				
4	갑판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계류중인 어선사이 건너다가 물 에빠짐	☐ 고 ☐ 중 ☐ 저				
6	장시간 통발 적재및 어구 보수 등 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7	선회 및 선체 요동으로 적재된 통발/미끼 등의무너짐	☐ 고 ☐ 중 ☐ 저				
8	선내 이동중 장애물 또는 선체 동요로 걸리거나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상 이물질등에 의하여 미끄 러 넘어짐	☐ 고 ☐ 중 ☐ 저				
10	통발 고단 적재작업 중 추락	☐ 고 ☐ 중 ☐ 저				
11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12	좌초 및 육상 구조물 충돌	☐ 고 ☐ 중 ☐ 저				
13	황천항해 중 어선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양승 중 양승기에손 끼임 또는 작업복 감김으로 신 체 협착	☐ ☐ ☐ 고 중 저				
2	칼, 낫 등에 베임	☐ ☐ ☐ 고 중 저				
3	양승 중 선체 동요로 인한 적재 통발의 무너짐	☐ ☐ ☐ 고 중 저				
4	이동중 갑판상의 어구(로프류) 걸려넘어짐	☐ ☐ ☐ 고 중 저				
5	갑판 이동 중 해수또는 이 물질로 인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6	투승 중 어구 및통발 등 에 끼여 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양승 작업 중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8	투양승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9	투양승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한 재해	☐ ☐ ☐ 고 중 저				
10	양승 중 로프류의뒹 또는 터짐으로인한 작업자 맞음	☐ ☐ ☐ 고 중 저				
11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한 작업자 넘어짐	☐ ☐ ☐ 고 중 저				
12	정리되지 않거나협소한 선 내 공간이동 중 넘어짐 및 부딪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선별 작업 중 작업대에 부딪힘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중 넘어짐	☐ ☐ ☐ 고 중 저				
3	개방된 어창(물칸)으로 떨어짐	☐ ☐ ☐ 고 중 저				
4	선별작업 중 어획물 가시, 집게 등에 찔림	☐ ☐ ☐ 고 중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 자연스런작업자세로 근골 격계 질환	☐ ☐ ☐ 고 중 저				
6	어획물 운반용 도 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 로 인한맞음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작업 중 선 체와 부두 사이끼임	☐ ☐ ☐ 고 중 저				
2	갑판 정리 및 하역 준비 작업 중선체 동요로 넘어 짐	☐ ☐ ☐ 고 중 저				
3	어선의 충돌 및 좌초	☐ ☐ ☐ 고 중 저				
4	물칸 및 갑판에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 고 중 저				
7						
8						
9						

위험성 평가표

14. 연안통발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 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땃·계선줄 등에손가락 끼임	☐ 고 ☐ 중 ☐ 저				
2	부두와 어선사이이동 시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3	너울 또는 타선통항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넘어짐	☐ 고 ☐ 중 ☐ 저				
4	갑판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계류중인 어선사이 건너다가 물에빠짐	☐ 고 ☐ 중 ☐ 저				
6	장시간 통발 적재및 어구 보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7	선회 및 선체 요동으로 적재된 통발/미끼 등의무너짐	☐ 고 ☐ 중 ☐ 저				
8	선내 이동중 장애물 또는 선체 동요로 걸리거나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상 이물질등에 의하여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10	통발 고단 적재작업 중 추락	☐ 고 ☐ 중 ☐ 저				
11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12	좌초 및 육상 구조물 충돌	☐ 고 ☐ 중 ☐ 저				
13	황천항해 중 어선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양승 중 양승기에손 끼임 또는 작업복 감김으로 신체 협착	☐ ☐ ☐ 고 중 저				
2	칼, 낫 등에 베임	☐ ☐ ☐ 고 중 저				
3	양승 중 선체 동요로 인한 적재 통발의 무너짐	☐ ☐ ☐ 고 중 저				
4	이동중 갑판상의 어구(로프류) 걸려넘어짐	☐ ☐ ☐ 고 중 저				
5	갑판 이동 중 해수또는 이물질 로 인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6	투승 중 어구 및통발 등에 끼 여 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양승 작업 중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8	투양승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 격계질환	☐ ☐ ☐ 고 중 저				
9	투양승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인한 재해	☐ ☐ ☐ 고 중 저				
10	양승 중 로프류의뒹 또는 터짐 으로인한 작업자 맞음	☐ ☐ ☐ 고 중 저				
11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한 작업자 넘어짐	☐ ☐ ☐ 고 중 저				
12	정리되지 않거나협소한 선내 공 간이동 중 넘어짐 및 부딪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선별 작업 중 작업대에 부딪힘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중 넘어짐	☐ ☐ ☐ 고 중 저				
3	개방된 어창(물칸)으로 떨어짐	☐ ☐ ☐ 고 중 저				
4	선별작업 중 어획물 가시, 집게 등에 찔림	☐ ☐ ☐ 고 중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런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6	어획물 운반용 도 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 한맞음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작업 중 선 체와 부두 사이끼임	☐ ☐ ☐ 고 중 저				
2	갑판 정리 및 하역 준비 작업 중 선체 동요로 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선의 충돌 및 좌초	☐ ☐ ☐ 고 중 저				
4	물칸 및 갑판에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 고 중 저				
7						
8						
9						
10						
11						
12						

위험성 평가표

15. 근해문어단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 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땃·계선줄 등에손가락 끼임	☐ 고 ☐ 중 ☐ 저				
2	부두와 어선사이이동 시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3	너울 또는 타선통항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넘어짐	☐ 고 ☐ 중 ☐ 저				
4	갑판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계류중인 어선사이 건너다가 물에빠짐	☐ 고 ☐ 중 ☐ 저				
6	장시간 통발 적재및 어구 보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7	선회 및 선체 요동으로 적재된 통발/미끼 등의무너짐	☐ 고 ☐ 중 ☐ 저				
8	선내 이동중 장애물 또는 선체 동요로 걸리거나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상 이물질등에 의하여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10	통발 고단 적재작업 중 추락	☐ 고 ☐ 중 ☐ 저				
11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12	좌초 및 육상 구조물 충돌	☐ 고 ☐ 중 ☐ 저				
13	황천항해 중 어선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양승 중 양승기에손 끼임 또는 작업복 감김으로 신체협착	☐ ☐ ☐ 고 중 저				
2	칼, 낫 등에 베임	☐ ☐ ☐ 고 중 저				
3	양승 중 선체 동요로 인한 적재 통발의 무너짐	☐ ☐ ☐ 고 중 저				
4	이동중 갑판상의 어구(로프류) 걸려넘어짐	☐ ☐ ☐ 고 중 저				
5	갑판 이동 중 해수또는 이물질로 인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6	승 중 어구 및통발 등에 끼여 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양승 작업 중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8	투양승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9	투양승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자 세로 인한 재해	☐ ☐ ☐ 고 중 저				
10	양승 중 로프류의뒹 또는 터짐으로 인한 작업자 맞음	☐ ☐ ☐ 고 중 저				
11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한 작업자 넘어짐	☐ ☐ ☐ 고 중 저				
12	정리되지 않거나협소한 선내 공간 이동 중 넘어짐 및 부딪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선별 작업 중 작업대에 부딪힘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중 넘어짐	☐ ☐ ☐ 고 중 저				
3	개방된 어창(물칸)으로 떨어짐	☐ ☐ ☐ 고 중 저				
4	선별작업 중 어획물 가시, 집게 등에 찔림	☐ ☐ ☐ 고 중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런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6	어획물 운반용 도 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 한맞음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작업 중 선체와 부두 사이 끼임	☐ 고 ☐ 중 ☐ 저				
2	갑판 정리 및 하역 준비 작업 중 선체 동요로 넘어짐	☐ 고 ☐ 중 ☐ 저				
3	어선의 충돌 및 좌초	☐ 고 ☐ 중 ☐ 저				
4	물칸 및 갑판에서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획물 하역시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7						
8						

위험성 평가표

16. 근해장어통발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 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 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땃·계선줄 등에손가락 끼임	☐ 고 ☐ 중 ☐ 저				
2	부두와 어선사이이동 시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3	너울 또는 타선통항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넘어짐	☐ 고 ☐ 중 ☐ 저				
4	갑판 이동 중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계류중인 어선사이 건너다가 물 에빠짐	☐ 고 ☐ 중 ☐ 저				
6	장시간 통발 적재및 어구 보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7	선회 및 선체 요동으로 적재된 통발/미끼 등의무너짐	☐ 고 ☐ 중 ☐ 저				
8	선내 이동중 장애물 또는 선체 동요로 걸리거나넘어짐	☐ 고 ☐ 중 ☐ 저				
9	갑판상 이물질등에 의하여 미끄 러 넘어짐	☐ 고 ☐ 중 ☐ 저				
10	통발 고단 적재작업 중 추락	☐ 고 ☐ 중 ☐ 저				
11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12	좌초 및 육상 구조물 충돌	☐ 고 ☐ 중 ☐ 저				
13	황천항해 중 어선전복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양승 중 양승기에손 끼임 또는 작업복 감김으로 신체 협착	☐ ☐ ☐ 고 중 저				
2	칼, 낫 등에 베임	☐ ☐ ☐ 고 중 저				
3	양승 중 선체 동요로 인한 적재 통발의 무너짐	☐ ☐ ☐ 고 중 저				
4	이동중 갑판상의 어구(로프류) 걸려넘어짐	☐ ☐ ☐ 고 중 저				
5	갑판 이동 중 해수또는 이물질 로 인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6	투승 중 어구 및통발 등에 끼여 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양승 작업 중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 ☐ 고 중 저				
8	투양승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 격계질환	☐ ☐ ☐ 고 중 저				
9	투양승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인한 재해	☐ ☐ ☐ 고 중 저				
10	양승 중 로프류의뒹 또는 터짐 으로인한 작업자 맞음	☐ ☐ ☐ 고 중 저				
11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한 작업자 넘어짐	☐ ☐ ☐ 고 중 저				
12	정리되지 않거나협소한 선내 공 간이동 중 넘어짐 및 부딪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선별 작업중 작업대에 부딪힘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중 넘어짐	☐ 고 ☐ 중 ☐ 저				
3	개방된 여창(물칸)으로 떨어짐	☐ 고 ☐ 중 ☐ 저				
4	선별작업 중 어획물 가시, 집게 등에 찔림	☐ 고 ☐ 중 ☐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런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6	어획물 운반용 도 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 한맞음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작업 중 선 체와 부두 사이끼임	☐ ☐ ☐ 고 중 저				
2	갑판 정리 및 하역 준비 작업 중선체 동요로 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선의 충돌 및 좌초	☐ ☐ ☐ 고 중 저				
4	물칸 및 갑판에서 미끄러 넘어 짐	☐ ☐ ☐ 고 중 저				
5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하역시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 고 중 저				
7						
8						
9						
10						
11						
12						

위험성 평가표

17. 연안개량안강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짐블록이 높은 하중으로튀 어맞음	☐ ☐ ☐ 고 중 저				
2	실수로 망치로 손가락을쳐 맞음	☐ ☐ ☐ 고 중 저				
3	양망기 볼롤러 탈부착 작업중 탈락되어맞음	☐ ☐ ☐ 고 중 저				
4	선수 갑판에서 미끄러져넘 어짐	☐ ☐ ☐ 고 중 저				
5	승하선시 뱃전에서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6	어선내또는 선거고소작업 용 사다리에올라작업중떨 어짐	☐ ☐ ☐ 고 중 저				
7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 에의해화상	☐ ☐ ☐ 고 중 저				
8	작업 전반 요구되는안전수 칙 미준수, 부주의와실수 피해	☐ ☐ ☐ 고 중 저				
9	도장용 사다리가 부러져떨 어짐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볼롤러 등의 회전기계에 걸어 정비중에 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승하선중 선체와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 끼임	☐ 고 ☐ 중 ☐ 저				
3	어구 정비 중 어구에 걸려있는 이물질에 찢림	☐ 고 ☐ 중 ☐ 저				
4	전동 그라인더로와이어를 절단 하는중 그라인더에 베임	☐ 고 ☐ 중 ☐ 저				
5	캡스턴 등의 회전기계에 줄작업 중튀는 줄에 맞음					
6	돛 운반 거치 과정에서 맞음	☐ 고 ☐ 중 ☐ 저				
7	보행중 돌출물에도는 미끄러져 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8	보행중 미끄러지거나어구, 구조 물에 걸려넘어짐	☐ 고 ☐ 중 ☐ 저				
9	승하선시 뱃전에서넘어짐, 떨어 짐	☐ 고 ☐ 중 ☐ 저				
10	높이적재된어구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보행중 어창구 헛디딤떨어짐 어창구에서 어창 선적시 불균 형, 헛디딤으로떨어짐	☐ 고 ☐ 중 ☐ 저				
11	선실화재	☐ 고 ☐ 중 ☐ 저				
12	작업 전반 요구되는안전수칙 미 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13	어구, 돛 등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과정에서맞음	☐ 고 ☐ 중 ☐ 저				
14	어구정비중그라인더에베임	☐ 고 ☐ 중 ☐ 저				
15	좁은통로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 중 선체돌출물 등에 부딪히거나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6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고 ☐ 중 ☐ 저				
17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하되는 그물이나 줄에 신체 끼임, 물에빠짐	☐ ☐ ☐ 고 중 저				
2	볼롤러, 사이드 롤러 등의 풀리, 드럼에줄또는그물을 걸어감아 올리거나 내리는중에 회전체와어구사이에신체끼임	☐ ☐ ☐ 고 중 저				
3	인양되는 페어구, 프 로펠러의 이물질을제거하는중칼 에베임	☐ ☐ ☐ 고 중 저				
4	양망 중에 줄(와이어) 이 터져 맞음, 물에빠짐	☐ ☐ ☐ 고 중 저				
5	줄이터져달린어구 가 낙하되어 맞음,갈림	☐ ☐ ☐ 고 중 저				
6	투양망중물쳐진그 물또는연결된속구에맞음	☐ ☐ ☐ 고 중 저				
7	양묘시 닻이 거치대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거치대 이탈 또는튀어 맞음	☐ ☐ ☐ 고 중 저				
8	하중이 걸리는 마스트, 용두, 도 르래 등이 파손되어 맞음,갈림	☐ ☐ ☐ 고 중 저				
9	닻, 쇠파이프 등의무거운 물건 을 들어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 체맞음	☐ ☐ ☐ 고 중 저				
10	보행 또는 작업 동작중 롤러 드 럼 등의 선체돌출물에 부딪힘 선체요동, 미끄럼으로 주변 구 조물에부딪힘	☐ ☐ ☐ 고 중 저				
11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 ☐ ☐ 고 중 저				

12	계단의 상부에서 미 끄러져떨어짐	☐ ☐ ☐ 고 중 저				
13	양투하 어구에 끼이거나 맞아 물에 빠짐	☐ ☐ ☐ 고 중 저				
1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와실수피해	☐ ☐ ☐ 고 중 저				
15		☐ ☐ ☐ 고 중 저				
16		☐ ☐ ☐ 고 중 저				
17		☐ ☐ ☐ 고 중 저				
18		☐ ☐ ☐ 고 중 저				
19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가시에찔림	☐ ☐ ☐ 고 중 저				
2	어획물 가구를 손운 반중걸리거나헛디떠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창적재차 어창구주변에서헛디 디거나 균형을잃어떨어짐	☐ ☐ ☐ 고 중 저				
4	멸치 자숙솥의 끓는물, 연돌 등 에 데어화상	☐ ☐ ☐ 고 중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 미준수	☐ ☐ ☐ 고 중 저				
6	고기담기, 가구운반등 반복적, 과중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7	좁은 어획물 처리공간에서 어획 물 사이로보행중헛디떠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입항 선수 계류작업중 닻이 타 선에 접촉하며 움직여 끼임	☐ ☐ ☐ 고 중 저				
9	계선줄 연결, 튜묘 중 줄(돛줄)이 튀어맞음	☐ ☐ ☐ 고 중 저				
10	안벽, 타선을당기거나 밀어 접 안할 때힘의 균형을 잃어넘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크레인으로 어구하역차량적 과정에서그물에걸려달려올라간후 떨어짐	☐ 고 ☐ 중 ☐ 저				
2	어구나어획물을육상으로달아올리는과정에서일부가떨어져맞음	☐ 고 ☐ 중 ☐ 저				
3	갑판, 어창에서미끄러져넘어짐	☐ 고 ☐ 중 ☐ 저				
4	크레인으로 어구를하역하는 과정에서그물에올라타하선하다떨어짐	☐ 고 ☐ 중 ☐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6	어구등중량물을크레인으로달아아송시맞음, 끼임	☐ 고 ☐ 중 ☐ 저				
7	조석간만의 차가 큰부두에서승하선,하역작업에서떨어져물에빠짐	☐ 고 ☐ 중 ☐ 저				
8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끼임, 맞음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11		☐ 고 ☐ 중 ☐ 저				
12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18. 근해안강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 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땀 철판등 정비하고 거치하는 과정에서 끼임	☐ ☐ ☐ 고 중 저				
2	실수로 망치로 손가락을쳐맞음	☐ ☐ ☐ 고 중 저				
3	양망기 볼롤러 탈부착 작업중 탈락되어맞음	☐ ☐ ☐ 고 중 저				
4	선수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 ☐ ☐ 고 중 저				
5	승하선시 뱃전에서넘어짐, 떨어 짐	☐ ☐ ☐ 고 중 저				
6	어선내또는 선거고소작업 용사 다리에올라작업중떨어짐	☐ ☐ ☐ 고 중 저				
7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의해화상	☐ ☐ ☐ 고 중 저				
8	작업 전반 요구되는안전수칙 미 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 ☐ 고 중 저				
9	도장용 사다리가 부러져떨어짐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돛을 정비 후 선수 또는 우현측 거치대로 이송·거 치하는 과정에서 끼임	☐ ☐ ☐ 고 중 저				
2	어구를 달아 정비하거나 선적할 때어구의 일부 또는중량 부속구 (뺨침대, 부이)가 분리되어 떨어 져 맞음	☐ ☐ ☐ 고 중 저				
	멀치채반 등을 달아 선적하는 중 이탈되어 낙하 맞음	☐ ☐ ☐ 고 중 저				
3	캡스턴 등의 회전기계에 줄작업 중줄에 맞음	☐ ☐ ☐ 고 중 저				
4	갑판 보행, 계단에서 미끄러지 거나어구, 구조물에 걸려 넘어 짐	☐ ☐ ☐ 고 중 저				
5	승하선시 뱃전에서넘어짐, 떨어 짐					
6	사다리를 걸고 고소 작업을 하 던 중떨어짐	☐ ☐ ☐ 고 중 저				
	어창에 사다리를걸고 승하 중 미끄러져 떨어짐					
7	화물차 하차 작업중 적재함에서 떨어짐	☐ ☐ ☐ 고 중 저				
8	육상 크레인 작업중크레인 전복 으로 탑승자 떨어짐	☐ ☐ ☐ 고 중 저				
9	작업 전반 요구되는안전수칙 미 준수,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10	돛 등의 중량물을크레인으로 들 어 거치 중 부적절한 취급 방법 으로 인한끼임, 맞음, 넘어짐	☐ ☐ ☐ 고 중 저				
11	육상 크레인으로 어 구 등을 선적 작업중 짐매기 불 량으로인한 물건의 낙하 맞음, 넘어짐	☐ ☐ ☐ 고 중 저				
12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하되는 그물이나 줄에 신체 끼임, 물에빠짐	☐ ☐ ☐ 고 중 저				
2	볼롤러, 사이드 롤러 등의 풀리, 드럼에줄또는그물을 걸어감아 올리거나 내리는중에 회전체와어구사이에신체끼임	☐ ☐ ☐ 고 중 저				
3	인양되는 페어구, 프 로펠러의 이물질을제거하는중칼 에베임	☐ ☐ ☐ 고 중 저				
4	양망 중에 줄(와이어) 이 터져 맞음, 물에빠짐	☐ ☐ ☐ 고 중 저				
5	줄이터져달린어구 가 낙하되어 맞음,갈림	☐ ☐ ☐ 고 중 저				
6	투양망중뭉쳐진그 물또는연결된속구에맞음	☐ ☐ ☐ 고 중 저				
7	양묘시 닻이 거치대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거치대 이탈 또는튀어 맞음	☐ ☐ ☐ 고 중 저				
8	하중이 걸리는 마스트, 용두, 도 르래 등이 파손되어 맞음,갈림	☐ ☐ ☐ 고 중 저				
9	닻, 쇠파이프 등의무거운 물건 을 들어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 체맞음	☐ ☐ ☐ 고 중 저				
10	보행 또는 작업 동작중 롤러 드 럼 등의 선체돌출물에 부딪힘 선체요동, 미끄럼으로 주변 구 조물에부딪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가시에찔림	☐ ☐ ☐ 고 중 저				
2	어획물 가구를 손운 반중걸리거나헛디떠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창적재차 어창구주변에서헛디 디거나 균형을잃어떨어짐	☐ ☐ ☐ 고 중 저				
4	멸치 자숙솔의 끓는물, 연돌 등 에 데어화상	☐ ☐ ☐ 고 중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 미준수	☐ ☐ ☐ 고 중 저				
6	고기담기, 가구운반등 반복적, 과중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7	좁은 어획물 처리공간에서 어획 물사이로보행중헛디떠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입항 선수 계류작업중 닻이 타 선에 접촉하며 움직여 끼임	☐ ☐ ☐ 고 중 저				
9	계선줄 연결, 튜묘 중 줄(닻줄)이 튀어맞음	☐ ☐ ☐ 고 중 저				
10	안벽, 타선을당기거나 밀어 접 안할 때힘의 균형을 잃어넘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크레인으로 어구하역차량적 과정에서그물에걸려달려올라간후 떨어짐	☐ 고 ☐ 중 ☐ 저				
2	어구나어획물을육상으로달아올리는과정에서일부가떨어져맞음	☐ 고 ☐ 중 ☐ 저				
3	갑판, 어창에서미끄러져넘어짐	☐ 고 ☐ 중 ☐ 저				
4	크레인으로 어구를하역하는 과정에서그물에올라타하선하다떨어짐	☐ 고 ☐ 중 ☐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6	어구등중량물을크레인으로달아아송시맞음, 끼임	☐ 고 ☐ 중 ☐ 저				
7	조석간만의 차 가 큰부두에서 승하선,하역작업에서 떨어져물에빠짐	☐ 고 ☐ 중 ☐ 저				
8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11		☐ 고 ☐ 중 ☐ 저				
12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19. 근해채낚기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앵커 준비 작업중 선수부 구조물에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2	선내 이동 중 장애물 또는 선체 동요로 걸리거나넘어짐	☐ 고 ☐ 중 ☐ 저				
3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4	씨앵커 준비 작업중 씨앵커 구조물또는 로프류 등에맞음	☐ 고 ☐ 중 ☐ 저				
5		☐ 고 ☐ 중 ☐ 저				
6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11		☐ 고 ☐ 중 ☐ 저				
12		☐ 고 ☐ 중 ☐ 저				
13		☐ 고 ☐ 중 ☐ 저				
14		☐ 고 ☐ 중 ☐ 저				
15		☐ 고 ☐ 중 ☐ 저				
16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씨앵커를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본체와 로프류에 손끼임	☐ ☐ ☐ 고 중 저				
2	조업 중 갑판에서미끄러 넘어짐 선내 이동 중 넘어짐	☐ ☐ ☐ 고 중 저				
3	조업 중 부주의로활어창 또는 어창으로 떨어짐	☐ ☐ ☐ 고 중 저				
4	조업중 통항 어선과의 충돌	☐ ☐ ☐ 고 중 저				
5	수동 채낚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 고 중 저				
6	조업 중 불안정한자세로 근골격 계질환 발생	☐ ☐ ☐ 고 중 저				
7	채낚기 낚시에 손부위 찢림	☐ ☐ ☐ 고 중 저				
8	심한 선체 동요로인한 작업자 넘어짐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11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체 동요로 어상자 또는 팬 낙 하하여 깔리거나 맞음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어획물선별중 넘어짐 어획 부산물로 인한 미끄러짐	☐ ☐ ☐ 고 중 저				
3	어획물처리 및 정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어획물에게 물림	☐ ☐ ☐ 고 중 저				
4	어상자 적재, 탈팬등 반복작업 으로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런작업자세	☐ ☐ ☐ 고 중 저				
6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 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고 ☐ 중 ☐ 저				
3	입항차 씨앵커를감는 과정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으로 부상	☐ 고 ☐ 중 ☐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질 등 으로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고 ☐ 중 ☐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로 미 확보로 인한 넘어짐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20. 근해연승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끼임 계선줄을 조정하다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사이드 롤러 등의회전기계를 구동 중끼임	☐ 고 ☐ 중 ☐ 저				
3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끼임	☐ 고 ☐ 중 ☐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그라인더에베임	☐ 고 ☐ 중 ☐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중량물이요동 으로 떨어져 신체맞음	☐ 고 ☐ 중 ☐ 저				
6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돌출 등에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의해 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조물에 걸려넘어짐 보행, 손운반중 갑판의 요철을 보지못하고 헛디더 넘어짐	☐ 고 ☐ 중 ☐ 저				
8	승하선시 미끄러지거나 헛디더 넘어짐,떨어짐	☐ 고 ☐ 중 ☐ 저				
9	어구 선적 손운반작업중 미끄러져떨어짐	☐ 고 ☐ 중 ☐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물에떨어짐	☐ 고 ☐ 중 ☐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2	신너 유증기가 담뱃불에의해폭발 식당 누출 가스 폭발화상	☐ 고 ☐ 중 ☐ 저				
13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14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떨어짐	☐ 고 ☐ 중 ☐ 저				
1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6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양승 중 양승기에손 끼임 또는 작업복 감김으로 신체 협착	☐ 고 ☐ 중 ☐ 저				
2	선체와 로프(모릿줄)사이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3	갑판 작업 중 못등 뽀족한 물체 에 찔림	☐ 고 ☐ 중 ☐ 저				
4	양망 중 선체 동요로 인한 적재 통발의 무너짐	☐ 고 ☐ 중 ☐ 저				
5	이동중 갑판상의어구(로프류) 걸 려넘어짐	☐ 고 ☐ 중 ☐ 저				
	조업중 선체 구조물에 걸림	☐ 고 ☐ 중 ☐ 저				
	조업중 선체 동요 로 넘어짐	☐ 고 ☐ 중 ☐ 저				
6	투승 중 어구 및통발 등에 끼여 물에 떨어짐	☐ 고 ☐ 중 ☐ 저				
7	어선간 접촉 및충돌	☐ 고 ☐ 중 ☐ 저				
8	투양승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 격계질환	☐ 고 ☐ 중 ☐ 저				
9	투양승 작업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 고 ☐ 중 ☐ 저				
10	양승 중 로프류의뒹 또는 터짐 으로인한 작업자 맞음	☐ 고 ☐ 중 ☐ 저				
	작업 보조 도구에맞음	☐ 고 ☐ 중 ☐ 저				
11	황천조업 중 어선전복	☐ 고 ☐ 중 ☐ 저				
	심한 선체 동요로인한 작업자 넘어짐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가시에 찔림 혹은 발이 찍힘	☐ ☐ ☐ 고 중 저				
2	어상자가 떨어지면서 맞음	☐ ☐ ☐ 고 중 저				
	어상자가 무너지면서 깔림	☐ ☐ ☐ 고 중 저				
3	갑판에서 어획물선별중 넘어짐	☐ ☐ ☐ 고 중 저				
	어창 계단에 오르 내리던 중 넘어짐	☐ ☐ ☐ 고 중 저				
4	어획물처리 및 적부하는 반복작 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런 작업자세	☐ ☐ ☐ 고 중 저				
6	어획물 운반용 도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맞음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시 육상으로어선계류를 위 해부두에 뛰어내리다가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 접촉으로 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3	컨베이어와 어상자 사이에 손이 끼임	☐ ☐ ☐ 고 중 저				
4	크레인 하역 중어획물 낙하에 의한 부상	☐ ☐ ☐ 고 중 저				
5	갑판 및 어창에서넘어짐	☐ ☐ ☐ 고 중 저				
6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 ☐ ☐ 고 중 저				
8	어획물 운반용 도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맞음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21. 근해형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끼임 계선줄을 조정하다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사이드 롤러 등의회전기계를 구동 중끼임	☐ 고 ☐ 중 ☐ 저				
3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끼임	☐ 고 ☐ 중 ☐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그라인더에베임	☐ 고 ☐ 중 ☐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중량물이요동 으로 떨어져 신체맞음	☐ 고 ☐ 중 ☐ 저				
6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돌출 등에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의해 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조물에 걸려넘어짐 보행, 손운반중 갑판의 요철을 보지못하고 헛디더 넘어짐	☐ 고 ☐ 중 ☐ 저				
8	승하선시 미끄러지거나 헛디더 넘어짐,떨어짐	☐ 고 ☐ 중 ☐ 저				
9	어구 선적 손운반작업중 미끄러져떨어짐	☐ 고 ☐ 중 ☐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물에떨어짐	☐ 고 ☐ 중 ☐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2	신너 유증기가 담뱃불에의해폭발 식당 누출 가스 폭발화상	☐ 고 ☐ 중 ☐ 저				
13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14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떨어짐	☐ 고 ☐ 중 ☐ 저				
1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6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망되는 그물, 형망틀, 끌줄 등에 끼일 위험	☐ ☐ ☐ 고 중 저				
2	사이드드럼으로 끌줄 등의 어구 를 감아 올리는 중에 드럼과 줄사 이, 줄과 선체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3	양망되는 어구에 걸려온 이물질 에 찢림	☐ ☐ ☐ 고 중 저				
4	양망, 양묘 중에 줄(와이어)이 터져 맞음	☐ ☐ ☐ 고 중 저				
5	드럼 줄작업중 강한 장력이 걸 린 줄을 놓쳐 줄이 풀리며 튀어 맞음	☐ ☐ ☐ 고 중 저				
6	예망중 끌줄 고정파이프가 파손 이탈되어 맞음	☐ ☐ ☐ 고 중 저				
7	보행 또는 작업동작중 선체돌출 물에 부딪힘	☐ ☐ ☐ 고 중 저				
8	갑판에서 미끄러 져 넘어짐	☐ ☐ ☐ 고 중 저				
9	갑판 바닥 요철물 을 헛디딤 넘어짐	☐ ☐ ☐ 고 중 저				
10	투하되는 어구를 밟아 넘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가시에 찔림	☐ ☐ ☐ 고 중 저				
2	훅에 발이 찍힘	☐ ☐ ☐ 고 중 저				
3	어상자가 떨어지 면서 맞음	☐ ☐ ☐ 고 중 저				
4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중 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 계단에 오르 내리던 중 넘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처리 및 적부하는 반복작 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7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연스 런작업자세	☐ ☐ ☐ 고 중 저				
8	어획물 운반용 도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맞음	☐ ☐ ☐ 고 중 저				
9	얼음창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10	한랭한 얼음창에 서 작업으로 인한 동상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시 육상으로어선계류를 위 해부두에 뛰어내리다가 넘어짐	☐ ☐ ☐ 고 중 저				
2	어선 접촉으로 물 에 떨어짐	☐ ☐ ☐ 고 중 저				
3	컨베이어와 어상자 사이에 손이 끼임	☐ ☐ ☐ 고 중 저				
4	크레인 하역 중어획물 낙하에 의한 부상	☐ ☐ ☐ 고 중 저				
5	갑판 및 어창에서 넘어짐	☐ ☐ ☐ 고 중 저				
6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 ☐ ☐ 고 중 저				
8	어획물 운반용 도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맞음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22. 기선권현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끼임 계선줄을 조정하다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사이드 롤러 등의회전기계를 구동 중끼임	☐ ☐ ☐ 고 중 저				
3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이에끼임	☐ ☐ ☐ 고 중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그라인더에베임	☐ ☐ ☐ 고 중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중량물이요동 으로 떨어져 신체맞음	☐ ☐ ☐ 고 중 저				
6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돌출 등에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의해 구조물에 부딪힘	☐ ☐ ☐ 고 중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조물에 걸려넘어짐 보행, 손운반중 갑판의 요철을 보지못하고 헛디터 넘어짐	☐ ☐ ☐ 고 중 저				
8	승하선시 미끄러지거나 헛디터 넘어짐,떨어짐	☐ ☐ ☐ 고 중 저				
9	어구 선적 손운반작업중 미끄러져떨어짐	☐ ☐ ☐ 고 중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물에떨어짐	☐ ☐ ☐ 고 중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 ☐ 고 중 저				
12	신너 유증기가 담뱃불에의해폭발 식당 누출 가스 폭발화상	☐ ☐ ☐ 고 중 저				
13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 ☐ 고 중 저				
14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떨어짐	☐ ☐ ☐ 고 중 저				
1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6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 ☐ 고 중 저				
17	계선줄작업에서 계선줄에 끼임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망되는 그물 등에 끼일 위험	☐ ☐ ☐ 고 중 저				
2	사이드드럼으로 끌줄 등의 어구를감아 올리는 중에드럼과 줄사이,줄과 선체사 이에끼임	☐ ☐ ☐ 고 중 저				
3	양망되는 어구에 걸려온 이물질 에찔림	☐ ☐ ☐ 고 중 저				
4	양망, 양묘 중에 줄(와이어)이 터져맞음	☐ ☐ ☐ 고 중 저				
5	드럼 줄작업중 강 한 장력이 걸린 줄을 놓쳐 줄이 풀리며 튀어 맞음	☐ ☐ ☐ 고 중 저				
6	예망중 끌줄 고정파이프가 파손 이탈되어 맞음	☐ ☐ ☐ 고 중 저				
7	보행 또는 작업동작중 선체돌출 물에 부딪힘	☐ ☐ ☐ 고 중 저				
8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9	어구를 당기거나밀 때 힘의 균 형을 잃어 넘어짐	☐ ☐ ☐ 고 중 저				
16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멸치발을 정리하고 올미던중 손 끼임	☐ 고 ☐ 중 ☐ 저				
2	자숙기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손끼임	☐ 고 ☐ 중 ☐ 저				
3	멸치발 세척중 고압수에 얼굴 화상	☐ 고 ☐ 중 ☐ 저				
4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구를 당기거나밀 때 힘의 균형 잃어 넘어짐	☐ 고 ☐ 중 ☐ 저				
6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시 육상으로어선계류를 위 해부두에 뛰어내리다가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 접촉으로 물에 떨어짐	☐ 고 ☐ 중 ☐ 저				
3	컨베이어와 어상자 사이에 손이 끼임	☐ 고 ☐ 중 ☐ 저				
4	크레인 하역 중어획물 낙하에 의한 부상	☐ 고 ☐ 중 ☐ 저				
5	갑판 및 어창에서넘어짐	☐ 고 ☐ 중 ☐ 저				
6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7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 고 ☐ 중 ☐ 저				
8	어획물 운반용 도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맞음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23. 근해봉수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끼임 계선줄을 조정하다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사이드 롤러 등의회전기계를 구동 중끼임	☐ 고 ☐ 중 ☐ 저				
3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이에끼임	☐ 고 ☐ 중 ☐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그라인더에베임	☐ 고 ☐ 중 ☐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중량물이요동 으로 떨어져 신체맞음	☐ 고 ☐ 중 ☐ 저				
6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돌출 등에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의해 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조물에 걸려넘어짐 보행, 손운반중 갑판의 요철을 보지못하고 헛디터 넘어짐	☐ 고 ☐ 중 ☐ 저				
8	승하선시 미끄러지거나 헛디터 넘어짐,떨어짐	☐ 고 ☐ 중 ☐ 저				
9	어구 선적 손운반작업중 미끄러져떨어짐	☐ 고 ☐ 중 ☐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물에떨어짐	☐ 고 ☐ 중 ☐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2	신너 유증기가 담뱃불에의해폭발 식당 누출 가스 폭발화상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3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14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떨어짐	☐ 고 ☐ 중 ☐ 저				
1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6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고 ☐ 중 ☐ 저				
17	계선줄작업에서 계선줄에 끼임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망되는 그물 등에 끼일 위험	☐ 고 ☐ 중 ☐ 저				
2	사이드드럼으로 끌줄 등의 어구를감아 올리는 중에드럼과 줄사이,줄과 선체사 이에끼임	☐ 고 ☐ 중 ☐ 저				
3	양망되는 어구에 걸려온 이물질 에찔림	☐ 고 ☐ 중 ☐ 저				
4	양망, 양묘 중에 줄(와이어)이 터져맞음	☐ 고 ☐ 중 ☐ 저				
5	드럼 줄작업중 강 한 장력이 걸린 줄을 놓쳐 줄이 풀리며 튀어 맞음	☐ 고 ☐ 중 ☐ 저				
6	예망중 끌줄 고정파이프가 파손 이탈되어 맞음	☐ 고 ☐ 중 ☐ 저				
7	보행 또는 작업동작중 선체돌출 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8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고 ☐ 중 ☐ 저				
9	어구를 당기거나밀 때 힘의 균 형을 잃어 넘어짐	☐ 고 ☐ 중 ☐ 저				
16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멸치발을 정리하고 올미던중 손 끼임	☐ 고 ☐ 중 ☐ 저				
2	자숙기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손끼임	☐ 고 ☐ 중 ☐ 저				
3	멸치발 세척중 고압수에 얼굴 화상	☐ 고 ☐ 중 ☐ 저				
4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구를 당기거나밀 때 힘의 균형을 잃어 넘어짐	☐ 고 ☐ 중 ☐ 저				
6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안 시 육상으로어선계류를 위 해부두에 뛰어내리다가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 접촉으로 물에 떨어짐	☐ 고 ☐ 중 ☐ 저				
3	컨베이어와 어상자 사이에 손이 끼임	☐ 고 ☐ 중 ☐ 저				
4	크레인 하역 중어획물 낙하에 의한 부상	☐ 고 ☐ 중 ☐ 저				
5	갑판 및 어창에서넘어짐	☐ 고 ☐ 중 ☐ 저				
6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7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 고 ☐ 중 ☐ 저				
8	어획물 운반용 도구(갈고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맞음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11		☐ 고 ☐ 중 ☐ 저				
12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24. 잠수기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 용접 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승하선 과정에서 어선과 어선사이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2	선내 이동 중 또는 승하선 과정 에서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창에 보관 중인 잠수 용구를 꺼내다 떨어짐	☐ ☐ ☐ 고 중 저				
4	산소통 등 중량물이동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부상	☐ ☐ ☐ 고 중 저				
5	항해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6	어선간 접촉 및중돌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조업 중 사이드드럼, 공기 호스 등에 손가락 끼임	☐ ☐ ☐ 고 중 저				
2	갑판 작업 중 너울 또는 주변 통항 어선의 파도로 인한 넘어짐	☐ ☐ ☐ 고 중 저				
3	공기 호스 관련작업 이동 중 넘 어짐	☐ ☐ ☐ 고 중 저				
4	주변 통항선 공기호스 감음으로 인한 질식 위험	☐ ☐ ☐ 고 중 저				
5	오염된 공기 공급으로 인한 질 식위험	☐ ☐ ☐ 고 중 저				
6	장시간 진행되는채취·인양 과정 의 반복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 생	☐ ☐ ☐ 고 중 저				
7	땀 인양 과정에서땀 등 의 부 상	☐ ☐ ☐ 고 중 저				
8	채취 도구 등에 찔림	☐ ☐ ☐ 고 중 저				
9	장시간 잠수 작업등으로 잠수병 (감압병) 발생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획물 망태 인양작업 과정 중 사이드 드럼에 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어획물 선별 작업중 이물질, 너 울및 통항선 파도로넘어짐	☐ 고 ☐ 중 ☐ 저				
3	어획물 망태를 들어올리거나 옮 기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4		☐ 고 ☐ 중 ☐ 저				
5		☐ 고 ☐ 중 ☐ 저				
6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항해중 선내 이동 과정에서 걸려 넘어짐	☐ ☐ ☐ 고 중 저				
2	고속 항주로 인한 선체 동요로 넘어짐	☐ ☐ ☐ 고 중 저				
3	승하선시 뱃전에 서 뛰거나 미끄러 져 넘어짐	☐ ☐ ☐ 고 중 저				
4	입항 중 어선의 충돌 및 좌초 위치 확인 소홀	☐ ☐ ☐ 고 중 저				
5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망태 운반,양륙 등 반복 적,과중량 작업으로인한 근골격 계질환	☐ ☐ ☐ 고 중 저				
7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25. 연안들망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이 부러져 맞음 ☐ 전기톱에 베임 ☐ 망치에 맞음	☐ 고 ☐ 중 ☐ 저				
3	☐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고 ☐ 중 ☐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고 ☐ 중 ☐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 고 ☐ 중 ☐ 저				
6	☐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 고 ☐ 중 ☐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8	☐ 어선내 또는 선거고소작업중 떨어짐 ☐ 보행중 어창구 헛디뎠다 떨어짐	☐ 고 ☐ 중 ☐ 저				
9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고 ☐ 중 ☐ 저				
10	☐ 선내용접중 화재 ☐ 식당 누출가스 폭발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 어구를 당겨 정비중애그물이 나줄에신체끼임 ☐ 계선줄을 조정하다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 롤러 등의 회전기계를구동중 끼임	☐ 고 ☐ 중 ☐ 저				
3	☐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이에끼임	☐ 고 ☐ 중 ☐ 저				
4	☐ 어구정비중보망칼이나낚에베 임	☐ 고 ☐ 중 ☐ 저				
5	☐ 어구를 정비하고 정리중에 줄이 터지거나튀어맞음	☐ 고 ☐ 중 ☐ 저				
6	☐ 어구 속구, 얼음상자,쇠파이 프 등의 무거운물건을들어운반 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고 ☐ 중 ☐ 저				
7	☐ 보행중 미끄러지거나어구, 구조물에 걸려넘어짐 ☐ 보행, 손운반중 갑판의요철 을보지못하고헛디더 넘어짐	☐ 고 ☐ 중 ☐ 저				
8	☐ 승하선시 뱃전에서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9	☐ 사다리 작업중 떨어짐 ☐ 보행중 어창구 헛디더떨어짐 ☐ 어창구에서 어창선적시 불균 형, 헛디딤으로떨어짐	☐ 고 ☐ 중 ☐ 저				
10	☐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1	☐ 전기 스위치 방전과 유증기 에 의한폭발 ☐ 식당 누출 가스 폭발	☐ 고 ☐ 중 ☐ 저				
12	☐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 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3	☐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낚 에베임	☐ 고 ☐ 중 ☐ 저				
14	☐ 어구, 닻 등의 중량물을 들 거나 운반과정에서 근골격계질 환	☐ 고 ☐ 중 ☐ 저				
15	☐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떨어짐 ☐ 배 사이를 건너다녀울에 의 해 넘어져 선체와 선체사이에끼 임	☐ 고 ☐ 중 ☐ 저				
16	☐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 서 작업중선체돌출물 등에부딪 히거나 넘어짐,떨어짐	☐ 고 ☐ 중 ☐ 저				
17	☐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 한 끼임, 맞음 ☐ 관습적행동	☐ 고 ☐ 중 ☐ 저				
18	☐ 출항 계선줄 작업중 신체끼임 ☐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이에끼임	☐ 고 ☐ 중 ☐ 저				
19	☐ 계선줄 회수, 양묘중 줄(닻 줄)이 튀어맞음	☐ 고 ☐ 중 ☐ 저				
20	☐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 갑판어구; 요철물에걸려넘어 짐 ☐ 어구, 계선줄을당기거나밀때 힘의균형을잃어넘어짐	☐ 고 ☐ 중 ☐ 저				
21	☐ 육상 계선주 작업후승선시 벋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22	☐ 보행중 어창구 헛디딤떨어짐	☐ 고 ☐ 중 ☐ 저				
23	☐ 식당누출가스폭발	☐ 고 ☐ 중 ☐ 저				
24	☐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미준 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 투하되는 그물이나줄에 신체 끼임, 물에빠짐 ☐ 인양되는 어구와선체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2	☐ 현측 밖으로 뻗어있는 어구, 어획물등을 손으로 당겨올릴 때 줄 등의어구와 선체 사이에끼임	☐ ☐ ☐ 고 중 저				
3	☐ 양승기, 양망기, 사이드 롤러 등의 풀리, 드럼에 줄 또는그물 을 걸어 감아올리는 중에 회전 체와 어구사이에신체끼임	☐ ☐ ☐ 고 중 저				
4	☐ 인양되는 폐어구정리 중 보 망칼이나낚에베임	☐ ☐ ☐ 고 중 저				
5	☐ 양망(승) 중에줄(와이어)이 터져 맞음,물에빠짐 ☐ 닻자망의 상하 와이어가튀어 맞음 ☐ 양승기 사바퀴, 선수 롤러에 서 줄이탈락하며 튀어 맞음, 물 에빠짐 ☐ 비정상적으로 엉킨어구나걸 려온 폐어구 정리시 줄이튀어맞 음	☐ ☐ ☐ 고 중 저				
6	☐ 어구인양 중 어구에맞음 ☐ 어구인양 중 어구 에 연결된 속구에 맞음	☐ ☐ ☐ 고 중 저				
7	☐ 어구 방호용 탈부착 종대(파 이프) 파손, 탈락으로맞음	☐ ☐ ☐ 고 중 저				
8	☐ 닻, 통발, 얼음상자,쇠파이프 등의 무거운물건을들어운반과정 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고압세척수에맞음	☐ ☐ ☐ 고 중 저				

9	☐ 좁은통로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파도 등의 충격으로주변 구 조물에 부딪힘	☐ ☐ ☐ 고 중 저				
10	☐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 갑판어구및속구류에걸려넘어 짐 ☐ 어구를 당기거나 밀때힘의균 형이깨어지며넘어짐	☐ ☐ ☐ 고 중 저				
11	☐ 계단의 상부에서 미끄러져떨 어짐 ☐ 보행중 어창구 헛디터떨어짐	☐ ☐ ☐ 고 중 저				
12	☐ 양투하 어구에 끼이거나맞아 물에빠짐	☐ ☐ ☐ 고 중 저				
13	☐ 식당누출가스폭발	☐ ☐ ☐ 고 중 저				
14	☐ 조타실 배전반 과열화재 ☐ 기관실(배전반, 유증기 자연 발화 추정)화재	☐ ☐ ☐ 고 중 저				
15	☐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 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 ☐ 고 중 저				
16	☐ 어선간충돌	☐ ☐ ☐ 고 중 저				
17	☐ 어로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 ☐ 고 중 저				
18	☐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과 정에서근골격계질환 ☐ 어구를 밀고 단기는 과정에 서 힘의균형을 잃어 넘어짐, 근 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19	☐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 가시, 가오리 침, 꽃게발 등에찔림	☐ 고 ☐ 중 ☐ 저				
2	미끄러운 고기, 진,해파리 등을 밟아미끄러져넘어짐	☐ 고 ☐ 중 ☐ 저				
3	어창적재차 어창구주변에서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어 떨어짐	☐ 고 ☐ 중 ☐ 저				
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5	고기털기, 가구운반,드럼작업등 반복적,과중량작업으로인한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6	좁은어획물처리공간에서어획물 사이로 보행중 헛디디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 입항 작업중 계선줄 에신체끼임 ☐ 승하선중 선체와 선 체 또는 안벽사이에 끼임	☐ 고 ☐ 중 ☐ 저				
2	☐ 계선줄 연결, 튜요 중 줄(닷줄)이 튀어 맞음	☐ 고 ☐ 중 ☐ 저				
3	☐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갑판어구; 요철물에걸려넘어 짐 ☐ 안벽, 타선을당기거나 밀어 접안할 때힘의 균형을 잃어넘어 짐	☐ 고 ☐ 중 ☐ 저				
4	☐ 승하선시 뱃전에서뛰거나 미 끄러져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5	☐ 어창구 주변에서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어떨어짐	☐ 고 ☐ 중 ☐ 저				
6	☐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미준 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7	☐ 입항 중 어선간 충돌	☐ 고 ☐ 중 ☐ 저				
8	☐ 입항 중 좌초 또는선체접촉	☐ 고 ☐ 중 ☐ 저				
9	☐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부딪힘,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0	☐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 서 작업중선체돌출물 등에 부딪 힘 ☐ 보행중 헛디터 넘어 짐, 떨어짐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1	☐ 어획물 가구, 닻 등을 손운반 중 다른물체와의 사이에 손이끼임	☐ 고 ☐ 중 ☐ 저				
12	☐ 어구나 어획물을육상으로 달아 올리는과정에서 일부가 떨어저맞음	☐ 고 ☐ 중 ☐ 저				
13	☐ 갑판, 어창에서미끄러져넘어짐 ☐ 갑판어구; 요철물에 걸려넘어짐	☐ 고 ☐ 중 ☐ 저				
14	☐ 승하선시 뱃전에서뛰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5	☐ 야적 어구의 상부에 서미끄러져떨어짐	☐ 고 ☐ 중 ☐ 저				
16	☐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17	☐ 가구운반, 드럼작업,어구 양륙 등 반복적, 과중량작업으로 인한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8	☐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보행중 헛디더 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9						

위험성 평가표

26. 연안조망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이 부러져맞음 ☐ 전기톱에베임 ☐ 망치에맞음	☐ ☐ ☐ 고 중 저				
3	☐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 높은 곳에 보관된물건이 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 기관실 및 갑판에서미끄러져 넘어짐 ☐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걸려넘어짐	☐ ☐ ☐ 고 중 저				
7	☐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 어선내 또는 선거고소작업중떨어짐 ☐ 보행중 어창구 헛디뎠떨어짐	☐ ☐ ☐ 고 중 저				
9	☐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의해화상	☐ ☐ ☐ 고 중 저				
10	☐ 선내용접중화재 ☐ 식당누출가스폭발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사이드 롤러 등의회전기계를 구동 중끼임	☐ 고 ☐ 중 ☐ 저				
3	승하선중 선체와 선체 또는 안벽사이에끼임	☐ 고 ☐ 중 ☐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그라인더에베임	☐ 고 ☐ 중 ☐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중량물이요동 으로 떨어져 신체맞음	☐ 고 ☐ 중 ☐ 저				
6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돌출 등에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의해 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조물에 걸려넘어짐 보행, 손운반중 갑판의 요철을 보지못하고 헛디더 넘어짐	☐ 고 ☐ 중 ☐ 저				
8	승하선시 미끄러지거나 헛디더 넘어짐,떨어짐	☐ 고 ☐ 중 ☐ 저				
9	어구 선적 손운반작업중 미끄러져떨어짐	☐ 고 ☐ 중 ☐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물에떨어짐	☐ 고 ☐ 중 ☐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고 ☐ 중 ☐ 저				
12	신너 유증기가 담뱃불에의해폭발 식당 누출 가스 폭발화상	☐ 고 ☐ 중 ☐ 저				
13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14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떨어짐	☐ 고 ☐ 중 ☐ 저				
1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6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고 ☐ 중 ☐ 저				
17		☐ 고 ☐ 중 ☐ 저				
18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하되는 그물, 통발이나 줄(낙시줄),낙시에끼임	☐ ☐ ☐ 고 중 저				
2	손으로 현측 밖으로 뻗어있는 어구,어획물 등을 당겨 올릴 때 줄 등의어구와 선체 사이에끼임	☐ ☐ ☐ 고 중 저				
3	양승기, 양망기, 사이드 롤러 등의 풀리, 드럼에 줄 또는그물을 걸어 감아올리는 중에 회전체와 어구사이에 신체끼임	☐ ☐ ☐ 고 중 저				
4	물풍줄 기둥줄 정비불량으로 부러지며물풍줄이끼임 물풍 회수중 물풍이 바람을 타고 상승되며 줄에 끼어 같이 상승후 떨어짐	☐ ☐ ☐ 고 중 저				
5	인양되는 폐어구에 걸려있던 물 질에찢림 작업중칼에베임 투승중 낙시바늘이튀어찢림 가는 경심에 쓸려베임 고기가시에찢림	☐ ☐ ☐ 고 중 저				
6	어구(물풍) 투하중어구(물풍추) 나 줄이튀어맞음	☐ ☐ ☐ 고 중 저				
7	물풍지지대, 닻고정대, 돛대 등의 어로설비노후, 파손, 탈락으로맞음 샤쿨, 도르래 등의 속구 파손 비래 맞음	☐ ☐ ☐ 고 중 저				
8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 돌출물등에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 의해 구조물에 부딪힘 줄을 당기는 중 힘의 균형을 잃어 부딪힘	☐ ☐ ☐ 고 중 저				
9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걸려넘어짐 어구를 당기거나 밀 때 힘의 균형이 깨어지며넘어짐	☐ ☐ ☐ 고 중 저				
10	계단의 상부에서 미끄러져떨어짐 보행중어창구, 물칸 헛디터떨어짐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1	양투하 어구에 끼이거나 맞아 물에 빠짐	☐ 고 ☐ 중 ☐ 저				
14	작업전분야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고 ☐ 중 ☐ 저				
15	어선간충돌 어로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고 ☐ 중 ☐ 저				
16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어구를 밀고 단기는과정에서 힘 의 균형을 잃어 넘어짐, 근골격 계질환	☐ 고 ☐ 중 ☐ 저				
17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8	작업중칼에베임	☐ 고 ☐ 중 ☐ 저				
19	선체의 요동으로 뜨 거운 국물이 쏟아져화상	☐ 고 ☐ 중 ☐ 저				
20	갑판 파도 유입후 배수불량에 의한복원력상실전복	☐ 고 ☐ 중 ☐ 저				
21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생선 처리중 칼에 베임	☐ ☐ ☐ 고 중 저				
2	어획물선별처리중 미끄러져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창적재차 보행중 어창구주변에서헛 디디거나 미끄러져 떨어짐	☐ ☐ ☐ 고 중 저				
4	어획물처리중부주 의와 실수로 베임,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5	고기털기, 가구운반, 드럼작업등반복적, 과중량작업으로인 한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6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넘어지거 나떨어짐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작업중 계선줄에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 고 ☐ 중 ☐ 저				
3	승하선시 뱃전에서뛰어 건너다 미끄러지거나 헛디딤 떨어짐	☐ 고 ☐ 중 ☐ 저				
4	어창구(물칸) 주변에 서 헛디디거나 균형 을잃어떨어짐	☐ 고 ☐ 중 ☐ 저				
5	작업전분야안전수칙 미준수, 부 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6	입항중어선간충돌	☐ 고 ☐ 중 ☐ 저				
7	입항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고 ☐ 중 ☐ 저				
8	선체의요동으로 부딪힘, 넘 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9	좁은통로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 중 선 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고 ☐ 중 ☐ 저				
10	드럼을옮기던중 발끼임	☐ 고 ☐ 중 ☐ 저				
11	새우젓드럼등의어획물, 냉동미 끼등을달아올리는과정에서 떨어져맞음	☐ 고 ☐ 중 ☐ 저				
12	갑판, 어창에서 미끄 러져넘어짐 갑판 어구; 요철물에 걸려넘어짐	☐ 고 ☐ 중 ☐ 저				
13	승하선시뱃전에서뛰 거나미끄러져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4	야적어구의상부에서 미끄러져떨어짐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27. 연안복합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탈부착과정에서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2	주기관 정비중 벨 트에 끼임	☐ ☐ ☐ 고 중 저				
3	그라인더 날에 베이거나 날이 부러져 맞음,전기톱에 베임망치 에 맞음칼에 베임	☐ ☐ ☐ 고 중 저				
4	손으로 무거운 기관 부속품, 장 치를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 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부속품, 쇠파이프 등이 떨어져신체 맞음	☐ ☐ ☐ 고 중 저				
6	기관실, 좁은 작업공간에서 작 업중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7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8	밀고 당기는 작업중 균형을 잃 어 넘어짐	☐ ☐ ☐ 고 중 저				
9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0	어선내 또는 선거고소작업 중 떨어짐 보행중 어창구 헛디딤 떨어짐	☐ ☐ ☐ 고 중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 ☐ 고 중 저				
12	FRP보수 경화제손 접촉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3	기관실 유증기의폭발 아세틸렌 절단기산소 호스 발화 에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4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에 의한 각종 부상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5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과정에 서신체가 끼이거나맞음 무리한 힘으로 근골격계 질환	☐ ☐ ☐ 고 중 저				
16	공구사용이 미숙하여 베이거나 타박상	☐ ☐ ☐ 고 중 저				
17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선체돌출물 등에부딪히거 나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8	작업전 안전교육부족에 의한 끼 임,맞음 관습적 행동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출항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어구를 당겨 정비중에 그물이나 줄에 신체 끼임 계선줄을 조정하다신체 끼임	☐ ☐ ☐ 고 중 저				
2	사이드 롤러 등의회전기계를 구 동중 끼임	☐ ☐ ☐ 고 중 저				
3	승하선중 선체와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4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그라 인더에베임	☐ ☐ ☐ 고 중 저				
5	높은 선반등에 보관된 중량물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6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선체 돌출물등에 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 의해 구조 물에부딪힘	☐ ☐ ☐ 고 중 저				
7	보행중 미끄러지거나 어구, 구 조물에걸려 넘어짐 보행, 손운반 중갑판의 요철을 보지 못하고 헛디터 넘어짐	☐ ☐ ☐ 고 중 저				
8	승하선시 미끄러지거나 헛디터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9	어구 선적 손운반작업중 미끄러 져떨어짐 보행중 어창구 헛디터 어창에 떨어짐	☐ ☐ ☐ 고 중 저				
10	승하선시 뱃전에서물에 떨어짐	☐ ☐ ☐ 고 중 저				
11	주기관 쿨러 과열냉각수에 의해 화상	☐ ☐ ☐ 고 중 저				
12	신너 유증기가 담뱃불에 의해 폭발 식당 누출 가스 폭발 화상	☐ ☐ ☐ 고 중 저				
13	작업 전반 요구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출항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4	소금마대, 미끼, 어구 등 중량물을 다량 운반과정에서근골격계 질환	☐ 고 ☐ 중 ☐ 저				
15	어구 정비 중 보망칼이나 낫에 베임	☐ 고 ☐ 중 ☐ 저				
16	갑작스러운 선체의요동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짐	☐ 고 ☐ 중 ☐ 저				
17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18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 고 ☐ 중 ☐ 저				
19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하되는 그물,통발이나 줄(낙시줄), 낙시에 끼임	☐ ☐ ☐ 고 중 저				
2	손으로 현측 밖으로 뻗어있는 어구,어획물 등을 당겨올릴 때 줄 등의어구와 선체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3	양승기, 양망기,사이드 롤러 등의폴리, 드럼에 줄또는 그물을 걸어감아 올리는 중에회전체와 어구사이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4	물풍줄 기둥줄 정비불량으로 부러지며 물풍줄이 끼임 물풍 회수중 물풍이 바람을 타고상승되며 줄에 끼어 같이 상승후떨어짐	☐ ☐ ☐ 고 중 저				
5	인양되는 폐어구에 걸려있던 물질에 찢림 작업중 칼에 베임 투승중 낙시바늘이 튀어 찢림 가는 경심에 쓸려베임 고기 가시에 찢림	☐ ☐ ☐ 고 중 저				
6	어구(물풍) 투하중 어구(물풍추)나 줄이 튀어 맞음 어로 기계를 이용하여 어구 인양 중 당김줄, 낙시줄 등의 줄이팅기거나 터져줄에맞음, 어구에 맞음 회전기계 구동에따라 회전하는 어구와 그 부속구에 맞음	☐ ☐ ☐ 고 중 저				
7	물풍지지대, 닻고정대, 돛대 등의어로설비 노후,파손, 탈락으로 맞음 샤클, 도르래 등의 속구 파손 비래 맞음	☐ ☐ ☐ 고 중 저				
8	좁은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힘, 타박 보행중 선체 요동에 의해 구조물에부딪힘 줄을 당기는 중힘의 규형을 잃어부딪힘	☐ ☐ ☐ 고 중 저				

9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갑판 어구 및 속구류에 걸려 넘어짐 어구를 당기거나밀 때 힘의 균형이 깨어지며 넘어짐	☐ ☐ ☐ 고 중 저				
10	계단의 상부에서미끄러져 떨어짐 보행중 어창구,물칸 헛디딤 떨어짐	☐ ☐ ☐ 고 중 저				
11	양투하 어구에 끼이거나 맞아 물에빠짐	☐ ☐ ☐ 고 중 저				
12	주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해 화상 선체 요동으로조리대 위의 뜨거운물이 쏟아져화상	☐ ☐ ☐ 고 중 저				
13	기관실(배터리 전선 단락에 의한발화 추정) 화재로 인한 사망, 어선소실	☐ ☐ ☐ 고 중 저				
1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 ☐ 고 중 저				
15	어선간 충돌 어로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 ☐ 고 중 저				
16	무거운 물건을들어 운반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어구를 밀고 단기는 과정에서힘의 균형을 잃어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17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18	작업중 칼에 베임	☐ ☐ ☐ 고 중 저				
19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짐 선체 요동에 의한 어구 장력의 변화로 줄 터짐,팀으로 끼임, 맞음	☐ ☐ ☐ 고 중 저				
20	선체의 요동으로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화상	☐ ☐ ☐ 고 중 저				
21	갑판 파도 유입후배수불량에 의한복원력 상실 전복	☐ ☐ ☐ 고 중 저				
22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업중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 ☐ ☐ 고 중 저				

23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에 의한 끼임, 맞음 관습적 행동	☐ ☐ ☐ 고 중 저				
24	투하되는 그물,통발이나 줄(낙시 줄), 낙시에 끼임	☐ ☐ ☐ 고 중 저				
25	손으로 현측 밖으로 뺀어있는 어구,어획물 등을 당겨올릴 때 줄 등의어구와 선체 사이에 끼 임	☐ ☐ ☐ 고 중 저				
26	양승기, 양망기,사이드 롤러 등 의폴리, 드럼에 줄또는 그물을 걸어감아 올리는 중에회전체와 어구사이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 가시, 가오리 침 등에 찔림 생선 처리중 칼에베임	☐ ☐ ☐ 고 중 저				
2	어획물 선별 처리중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획물 가구를 손운반 중 걸리 거나헛디덕 넘어짐	☐ ☐ ☐ 고 중 저				
4	어획물 처리 운반적재 중 요동 으로넘어짐	☐ ☐ ☐ 고 중 저				
5	어창적재차 보행중 어창구 주변 에서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떨어 짐	☐ ☐ ☐ 고 중 저				
6	어획물 처리중 부주의와 실수로 베임,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7	고기털기, 가구운반, 드럼작업 등반복적, 과중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8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넘 어지거나 떨어짐	☐ ☐ ☐ 고 중 저				
9		☐ ☐ ☐ 고 중 저				
10		☐ ☐ ☐ 고 중 저				
11		☐ ☐ ☐ 고 중 저				
12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작업중 계선 줄에 신체 끼임 입항작업중 선체를 밀어내다 타선사이에 끼임 승하선중 선체와선체 또는 안벽 사이에 끼임 투묘 중 갑작스런추진으로 닻줄 에손 끼임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갑판 어구, 요철물에 걸려 넘어 짐	☐ ☐ ☐ 고 중 저				
3	승하선시 뱃전에서 뛰어 건너다 미끄러지거나 헛디딤 떨어짐	☐ ☐ ☐ 고 중 저				
4	어창구(물칸) 주변에서 헛디디거 나균형을 잃어 떨어 짐	☐ ☐ ☐ 고 중 저				
5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6	입항 중 어선간충돌	☐ ☐ ☐ 고 중 저				
7	입항 중 좌초 또는 선체접촉	☐ ☐ ☐ 고 중 저				
8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으로 부 딪힘,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9	좁은 통로 또는작업공간에서 작 업중 선체돌출물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10	어획물을 줄에 달아 양륙하던 중사이드 드럼과 줄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11	새우젓 드럼 등의어획물, 냉동 미끼등을 달아 올리는과정에서 떨어져맞음	☐ ☐ ☐ 고 중 저				
12	갑판, 어창에서 미끄러져 넘어 짐	☐ ☐ ☐ 고 중 저				
13	승하선시 뱃전에서 뛰거나 미끄 러져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14	야적 어구의 상부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 ☐ ☐ 고 중 저				
15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16	고기상자 손운반하역 등 반복 적,과중량 작업으로인한 근골격 계질환	☐ ☐ ☐ 고 중 저				
17	좁은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헛디 터넘어짐, 떨어짐 안벽과 어선간 높이차로 인한 떨어짐	☐ ☐ ☐ 고 중 저				
18		☐ ☐ ☐ 고 중 저				
19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28. 구획어업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 과정에서 신체끼임	☐ ☐ ☐ 고 중 저				
2	그라인더 날에 얼굴베이거나 날 이 부러져 맞음	☐ ☐ ☐ 고 중 저				
3	손으로 무거운 기계류의 탈부착, 운반과정에서 놓쳐서 신체맞음	☐ ☐ ☐ 고 중 저				
4	높은 곳에 보관된 물건이 선체 요동으로 떨어져 신체 맞음	☐ ☐ ☐ 고 중 저				
5	좁은 통로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신체돌출물 등에 부딪힘	☐ ☐ ☐ 고 중 저				
6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 넘어짐, 떨어짐	☐ ☐ ☐ 고 중 저				
8	어선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중 떨어짐	☐ ☐ ☐ 고 중 저				
9	기관 쿨러 과열 냉각수에 의한 화상	☐ ☐ ☐ 고 중 저				
10	선내용접중 화재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안전수칙 미준수	☐ ☐ ☐ 고 중 저				
2	중량물 손운반중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3	너울로 선체요동으로 해상추락	☐ ☐ ☐ 고 중 저				
4	출항 계선줄 작업중 비트사이 끼임	☐ ☐ ☐ 고 중 저				
5	출항 계선줄 작업중 줄이터져 맞음	☐ ☐ ☐ 고 중 저				
6	암초에 어선 좌초	☐ ☐ ☐ 고 중 저				
7						
8						
9						
10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양망 중 어구 및 그물목줄류 와이어로프류에 끼임	☐ 고 ☐ 중 ☐ 저				
2	양망기,로프와인더,롤러등에 끼 임	☐ 고 ☐ 중 ☐ 저				
3	양망중 끌줄, 후릿 줄 등 와이 어로프 류가 튕기거나 터지면서 맞음	☐ 고 ☐ 중 ☐ 저				
4	돌아가는 양망기 밑의 줄을 밟 고 달려들어감	☐ 고 ☐ 중 ☐ 저				
5	황천조업 중 어선 전복	☐ 고 ☐ 중 ☐ 저				
6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 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7	어구에 끼임	☐ 고 ☐ 중 ☐ 저				
8	어구에 걸린 이물질 제거 중 맞 음	☐ 고 ☐ 중 ☐ 저				
9	투양망 중 끌줄 및 후릿줄 등 와 이어로프/체인류/ 혹 등에 맞음	☐ 고 ☐ 중 ☐ 저				
10	어구에 깔림	☐ 고 ☐ 중 ☐ 저				
11	어체 점액 및 해 파리 등 미끄 러운 갑판에서 넘어질 위험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체 동요로 어상자 또는 팬 낙하하여 깔리거나 맞음	☐ 고 ☐ 중 ☐ 저				
2	갑판에서 어획물선별중 넘 어짐 어획 부산물로 인한 미끄 러짐	☐ 고 ☐ 중 ☐ 저				
3	어획물처리 및 정리 과정에 서 부주의로 인한 어획물에 게 물림	☐ 고 ☐ 중 ☐ 저				
4	어상자 적재, 탈판등 반복작 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5	어획물처리 및 적부시 부자 연스런작업자세	☐ 고 ☐ 중 ☐ 저				
6		☐ 고 ☐ 중 ☐ 저				
7		☐ 고 ☐ 중 ☐ 저				
8		☐ 고 ☐ 중 ☐ 저				
9		☐ 고 ☐ 중 ☐ 저				
10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예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준비 차 선내 이동 중 미 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2	어선간 접촉 및 충돌	☐ 고 ☐ 중 ☐ 저				
3	입항차 씨앵커를감는 과정에서 로프류 등에 맞음으로 부상	☐ 고 ☐ 중 ☐ 저				
4	작업차 갑판 이동중 이물질 등 으로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5	어창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획물 하역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근골격계 부상 발생	☐ 고 ☐ 중 ☐ 저				
7	부두와 선체 사이안전 통로 미 확보로 인한 넘어짐	☐ 고 ☐ 중 ☐ 저				
8						
9						
10						

위험성 평가표

29. 정치망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캡스턴롤러정비수리중 우발적 롤러 구동으로 손가락끼 임	☐ ☐ ☐ 고 중 저				
2	전기톱날, 그라인더날에베이거 나날이부러져맞음	☐ ☐ ☐ 고 중 저				
3	망치실수타박상	☐ ☐ ☐ 고 중 저				
4	크레인으로 어구정비그물달기작 업중어구에서떨어진속구에맞음	☐ ☐ ☐ 고 중 저				
5	롤러분해정비중볼트가중량압력 으로튀어맞음	☐ ☐ ☐ 고 중 저				
6	롤러분해정비중볼트가중량압력 으로튀어맞음	☐ ☐ ☐ 고 중 저				
7	기관실정비작업중 미끄러져넘어짐	☐ ☐ ☐ 고 중 저				
8	주기관점검중쿨러호스파열로과 열냉각수에의해화상	☐ ☐ ☐ 고 중 저				
9	선거에서기관실도장작업중유증 기와신너폭발화재로인한화상,사 망	☐ ☐ ☐ 고 중 저				
10	사고전반 요구되는안전수칙 미 준수	☐ ☐ ☐ 고 중 저				
11	중량어구를크레인으로달아작업 시부속구낙하맞음	☐ ☐ ☐ 고 중 저				
12	공구사용이 미숙하여 베이거나 타박상	☐ ☐ ☐ 고 중 저				
13		☐ ☐ ☐ 고 중 저				
14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캡스톤 롤러, 사바퀴등의회전 기계를구동하여 어구를 선적 중 줄에끼임	☐ 고 ☐ 중 ☐ 저				
2	크레인으로어구를달아 선적중 어구에 부착된촉돌에맞음 선적작업 중 합판이바람에날려 맞음	☐ 고 ☐ 중 ☐ 저				
3	부주의로몸을움직이다 조타실 계기에 부딪힘	☐ 고 ☐ 중 ☐ 저				
4	보행중 미끄러지거나어구, 구조 물에 걸려넘어짐 보행, 손운반 중 갑판의 요철 을 보지 못하고헛디더 넘어짐	☐ 고 ☐ 중 ☐ 저				
5	승하선, 어선간 이동시미끄러지 기나헛디더넘어짐, 떨어짐	☐ 고 ☐ 중 ☐ 저				
6	어구를 선적하는 중밀고당기는 과정에서균형을잃어넘어짐	☐ 고 ☐ 중 ☐ 저				
7	배를 건너 보행중 헛디더 타선 의 어창 등에떨어짐	☐ 고 ☐ 중 ☐ 저				
8	조타실 상부 전구 교체중 발을 헛디더 떨어짐	☐ 고 ☐ 중 ☐ 저				
9	작업 전반 요구되는안전수칙 미 준수, 부주의와실수피해	☐ 고 ☐ 중 ☐ 저				
10	돛 손운반중 놓쳐 맞음	☐ 고 ☐ 중 ☐ 저				
11	선적작업중 불안전한자세로넘어 짐	☐ 고 ☐ 중 ☐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투하되는 줄 또는그물에 걸려 선체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2	손으로 현측 밖으로뻗어있는 어 구, 어획물 등을 당겨 올릴 때 줄, 그물 등의 어구와 선체 사 이에 끼임	☐ ☐ ☐ 고 중 저				
3	캡스톤(롤러) 사이드드럼 등의 풀리, 드럼에 줄 또는 그물을 걸어 감아 올리는 중에 회전체 와 어구사이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4	크레인, 롤러, 배수기 등의 작 업 준비에서 끼임	☐ ☐ ☐ 고 중 저				
5	줄 절단중 칼에 베임	☐ ☐ ☐ 고 중 저				
6	캡스톤, 크레인 등의 어로 기 계로 어구 교체 투하.양망중 당 김줄, 닛줄등의 줄이 튀거나터 짐, 롤러등에서탈락으로 줄에 맞음	☐ ☐ ☐ 고 중 저				
7	양망중 멍돌 등의중량 속구가 갑판을통과하며 튀어 맞음 회전하는 크레인 혹또는 몸체, 달린 쪽대에 맞음	☐ ☐ ☐ 고 중 저				
8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크레 인 등의돌출물에 부딪힘 어구를 당기는 중힘의 균형을 잃어주변에 부딪힘 파도 너울에 의한충격으로 부 딪힘	☐ ☐ ☐ 고 중 저				
9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갑판 어구 또는 요철물에걸리 거나 헛디딤 넘어짐 어구를 당기거나 밀때 힘의 균 형이 깨어지며 넘어짐	☐ ☐ ☐ 고 중 저				
10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 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11	크레인 그물 작업중한쪽현 상 부 과중으로 인한 전복으로행방 불명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좁은 작업공간에서작업중 크레인 등의 돌출물에 부딪 힘	☐ ☐ ☐ 고 중 저				
2	갑판에서 미끄러져넘어짐 갑판 어구 또는 요철물에 걸리거나 헛디터 넘어짐 어구를 당기거나 밀때 힘 의 균형이 깨어지며 넘어짐	☐ ☐ ☐ 고 중 저				
3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 준수, 부주의와 실수 피해	☐ ☐ ☐ 고 중 저				
4	크레인 그물 작업중한쪽현 상부 과중으로 인한 전복으 로행방불명	☐ ☐ ☐ 고 중 저				
5	무거운 그물을 과도한 힘 으로 당겨근골격계질환 어구를 밀고 당기는과정에 서 힘의 균형을 잃어 넘어 짐, 근골격계질환 무거운 물건 운반중끼임, 맞음	☐ ☐ ☐ 고 중 저				
6	갑작스런 선체의 요동으로 넘어짐	☐ ☐ ☐ 고 중 저				
7	캡스턴 위치와 현측간 좁 은 공간으로줄 걸려 끼임	☐ ☐ ☐ 고 중 저				
8	작업전 안전교육 부실에 의한 끼임, 맞음 관습적 행동	☐ ☐ ☐ 고 중 저				
9	투하되는 줄 또는그물에 걸려 선체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10	손으로 현측 밖으로뻗어있는 어 구, 어획물 등을 당겨 올릴 때 줄, 그물 등의 어구와 선체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 조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1	캡스턴(롤러) 사이드드럼 등의 풀리, 드럼에 줄 또는 그물을 걸어 감아 올리는 중에 회전체와 어구 사이에 신체 끼임	☐ ☐ ☐ 고 중 저				
12	크레인, 롤러, 배수기 등의 작업 준비에서 끼임	☐ ☐ ☐ 고 중 저				
13	줄 절단중 칼에 베임	☐ ☐ ☐ 고 중 저				
14	캡스턴, 크레인 등의 어로 기계로 어구 교체 투하.양망중 당김줄, 닻줄등의 줄이 튀거나터짐, 롤러등에서탈락으로 줄에 맞음	☐ ☐ ☐ 고 중 저				
15	양망중 멍돌 등의중량 속구가 갑판을통과하며 튀어 맞음 회전하는 크레인 혹또는 몸체, 달린 쪽대에 맞음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 가시, 가오리 침 등에 찔림, 양수기 물에 귀를다침	☐ ☐ ☐ 고 중 저				
2	고기를 퍼올리는 쪽대 작업 중 쪽대 자루에 맞음	☐ ☐ ☐ 고 중 저				
3	파도 너울에 의한충격으로 고기상자운반중 부딪힘	☐ ☐ ☐ 고 중 저				
4	어획물 처리, 어상자 정리 운 반중 미끄러져 넘어짐	☐ ☐ ☐ 고 중 저				
5	계선 작업중 선체발밀기로 배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6	계선줄 거는 작업중 줄에 걸 리거나미끄러져 넘어짐 투묘, 안벽, 타선을 당기거나 밀어접안할 때 힘의균형을 잃 어 넘어짐	☐ ☐ ☐ 고 중 저				
7	승하선시 뱃전에서뛰어 건너 다 줄에걸려 떨어짐	☐ ☐ ☐ 고 중 저				
8	입항중 좌초	☐ ☐ ☐ 고 중 저				
9	안벽과 선체 갑판의 높이차 에 의한 떨어짐	☐ ☐ ☐ 고 중 저				
10	작업전 부실한 안 전교육에 의한 끼 임, 넘어짐, 떨어짐 어선 손밀기 등의관습적 계 선작업행동	☐ ☐ ☐ 고 중 저				
	물양장에서 하역작업중 지게 차, 화물차 등에 부딪힘,끼임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30. 어획물 운반선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선 정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그라인더 등 날카로운 도구로 정비작업 중 신체베임	☐ 고 ☐ 중 ☐ 저				
2	선내 이동 중 돌출구조물에 부딪힘	☐ 고 ☐ 중 ☐ 저				
3	기관실 및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고 ☐ 중 ☐ 저				
4	정비 작업 중 승하선 과정에서 추락	☐ 고 ☐ 중 ☐ 저				
5	냉동기 수리과정에서 암모니아 흡입	☐ 고 ☐ 중 ☐ 저				
6	기관실 냉각수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신체 화상	☐ 고 ☐ 중 ☐ 저				
7						
8						
9						
10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출항 및 어로준비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선내 보행중 미끄러 넘어짐	☐ ☐ ☐ 고 중 저				
2	선용품 또는 탁송품 선적 작업 중넘어짐	☐ ☐ ☐ 고 중 저				
3	선용품 또는 탁송품 선적 중 부두와선체사이 해상으로추락	☐ ☐ ☐ 고 중 저				
4	작업 도구 사용 부주의으로 인 한 신체 부상	☐ ☐ ☐ 고 중 저				
5	선내 이동중 선체 동요 등으로 넘어짐	☐ ☐ ☐ 고 중 저				
6	갑판에 보관된 로프 등의 갑판 용품에 걸려 넘어짐	☐ ☐ ☐ 고 중 저				
7	미자격자 항해 당직 배치, 피로 관리 부재 줄음 운항으로 어선 충돌	☐ ☐ ☐ 고 중 저				
8						
9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조업(이적작업)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접선 작업 중 어선 사이에 신체끼임	☐ 고 ☐ 중 ☐ 저				
2	어획물 이적작업중 갑판에 서 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3	이적 작업 중 활어창 또는 어창으로 떨어짐	☐ 고 ☐ 중 ☐ 저				
4	조업 중 불안정한자세로 구조물에부딪히거나 근골 격계 질환 발생	☐ 고 ☐ 중 ☐ 저				
5	작업 보조도구(갈고리, 합 판) 등에맞음	☐ 고 ☐ 중 ☐ 저				
6						
7						
8						
9						
10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어획물 취급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물고기 가시, 가 오리 침, 꽃게발 등에 찔림	☐ ☐ ☐ 고 중 저				
2	미끄러운 고기,진, 해파리 등을 밟아 미끄러져넘어짐	☐ ☐ ☐ 고 중 저				
3	어창적재차 어창구 주변에서 헛 디디거나 균형을잃어 떨어짐	☐ ☐ ☐ 고 중 저				
4	작업 전 분야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와 실수피해	☐ ☐ ☐ 고 중 저				
5	고기털기, 가구운반, 드럼작업등 반복적, 과중량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 ☐ 고 중 저				
6	좁은 어획물 처리공간에서 어획 물 사이로 보행중 헛디터 넘어 짐, 떨어짐	☐ ☐ ☐ 고 중 저				
7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입항 및 하역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
1	입항 작업 중 계선줄 또는 어선 사이에 손 끼임	☐ 고 ☐ 중 ☐ 저				
2	하역 설비(크레인등) 준비 과정 에서 신체 끼임	☐ 고 ☐ 중 ☐ 저				
3	입항 작업 차 선내 이동과정에서 서미끄러 넘어짐	☐ 고 ☐ 중 ☐ 저				
4	미자격자 향해 당직 배치, 피로 관리 부재 졸음 운항으로 어선 충돌	☐ 고 ☐ 중 ☐ 저				
5	선위확인 소홀로 인한 좌초	☐ 고 ☐ 중 ☐ 저				
6	하역과정에서 작업 용구의 낙하	☐ 고 ☐ 중 ☐ 저				
7	어획물 운반 또는작업 중 이동 과정에서 구조물 또는하역 설비 에 부딪힘	☐ 고 ☐ 중 ☐ 저				
8	작업 중 어선과어선사이, 어선 과부두사이를 왕래하면서 미끄 러 넘어짐	☐ 고 ☐ 중 ☐ 저				
9	개방된 어창 주변에서 작업중 추락	☐ 고 ☐ 중 ☐ 저				
10	장시간 연속 작업으로 인한 근 골격계질환	☐ 고 ☐ 중 ☐ 저				
11						
12						

※ 본 서식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http://www.komsa.or.kr>)

매 뉴 엘 명 어선원안전보건 매뉴얼(해설)

발 행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준석

발 행 부 서 안전관리실

발 행 일 2025. 4.

삽 화 국립수산과학원, CHAT-GPT

※ 본 매뉴얼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5년 어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